

2016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and Compensation Practices



2016년 BNK금융지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and Compensation Practices
BNK Financial Group

본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2017년 3월 3일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 장 성 세 환

성 세 환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1
2. 이사회.....	7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4
4.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81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125
6. 감사위원회	134
7. 리스크관리위원회	146
8. 이사회운영위원회	155
9. 그룹경영관리협의회	158
10. 리스크관리협의회	163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168
12.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168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172
2. 보수체계	184

첨부(관련 규정)	195
-----------------	-----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나. 지배구조 현황

다. 관련 규정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당사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 업무처리기준,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정기 및 수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2016년말 현재 이사회 내 사외이사 구성비율 : 57%)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2016년말 현재 금융분야 2명, 경제분야 2명, 경영분야 1명, 재무·회계분야 2명)하여 특정 배경이나 직업군에 이사회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회 규정 등 주요 내규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 포함)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의 재선임 검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개내용 확인 사이트 주소 : www.bnkfg.com)

당사는 이러한 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점검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후 환경 및 제도 변화 등을 감안하여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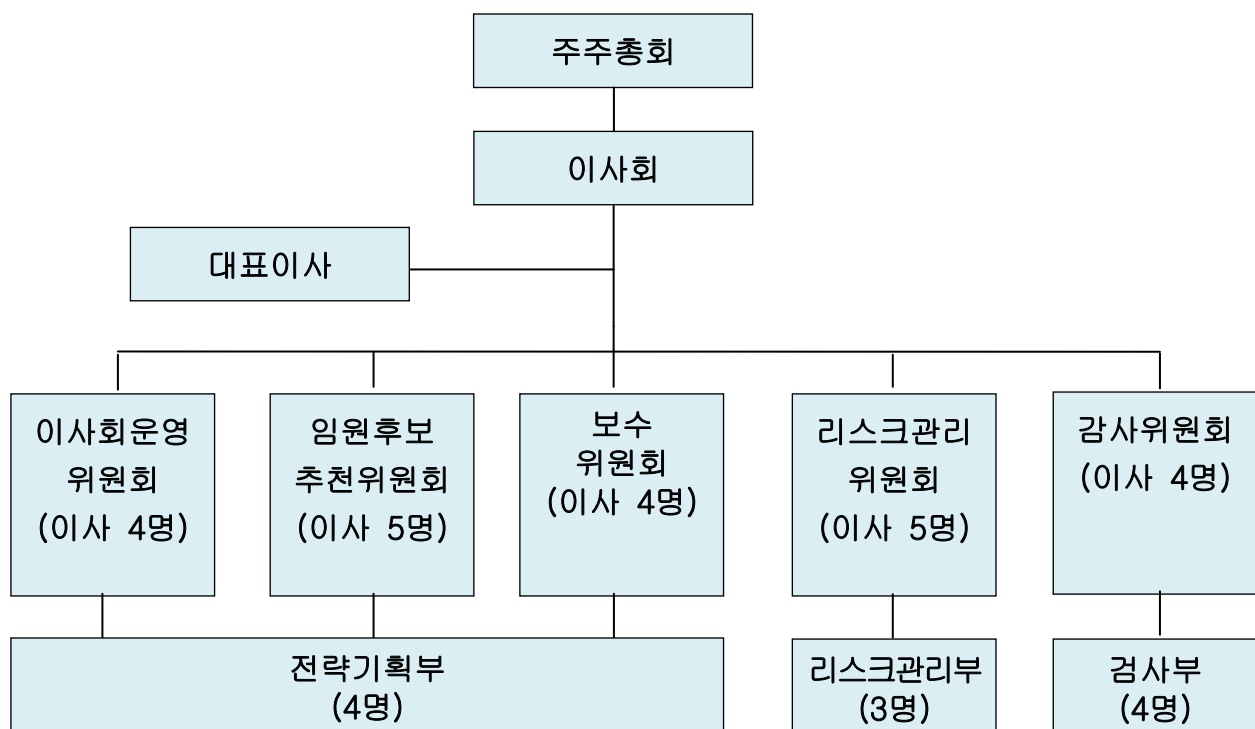
이러한 당사의 지배구조 관련 활동과 노력들은 객관적인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매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의 기업지배구조 평가등급 결과(www.cgs.or.kr)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배구조	A+	A	A+	A+	A+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2016. 12월말 현재)



(2) 지배구조의 특징

이사회는 당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 기구로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총 이사 수는 7명이며, 이 중 사외이사는 4명으로 총 이사 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며, 사외이사 선임 시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 이해관계인이나 영향력으로부터 배제할 것을 내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함에 따라 이사회에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사회 규정 제7조)

- ①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
- ②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③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제고에 필요한 업무

이사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와 일정 기준 충족 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임시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 회장의 요구와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내 위원회는 과반수의 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2016.10.28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통합) 등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는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

회는 전원 사외·비상임 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으며, 당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되는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시행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외이사와는 별도로 당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상법 제382조의 제3항 제3호(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임이사의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대주주의 관계자로 당사에 대한 경영감시 및 사내이사 견제기능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요약)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이름/상임·사외 ·비상임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 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주주총회 위임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	4/7	성세환(상임)	정관 § 44, 지배구조내부규범 § 11 이사회규정 § 11
이사회운영위원회	·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 결정 ·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결의	3/4	김찬홍(사외)	정관 § 48, 지배구조내부규범 § 23 이사회운영위원회 규정 § 6
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사 및 계열회사의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 승인 및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 감독	4/5	김창수(사외)	정관 § 48, 지배구조내부규범 § 26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 5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이름/상임·사외 ·비상임여부)	관련 규정
보수위원회	· 회사 발전을 위한 경영성과 제고 방안 수립 · 경영진의 성과목표 설정, 평가, 보상체계 수립	3/4	문일재(사외)	정관 § 48, 지배구조내부규범 § 27 보수위원회규정 § 6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임원 후보 검증 및 심사하여 후보 추천 · 후보자 발굴 관리,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3/5	김창수(사외)	정관 § 48, 지배구조내부규범 § 2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규정 § 6
감사위원회	· 회사 등의 감사계획 수립, 집행, 결과 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 법령,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4/4	김찬홍(사외)	정관 § 48, 지배구조내부규범 § 25 감사위원회회규정 § 11

다. 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3. 이사회규정
- 첨부4.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 첨부5.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 첨부6. 보수위원회규정
- 첨부7.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8. 감사위원회규정
- 첨부9.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 첨부10. 사외이사운영규정
- 첨부11.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정관은 지배구조법을 반영하여 201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 예정입니다.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나. 구성(이사)

다. 활동내역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전반 및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며,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지배구조법 § 15, 이사회규정 § 11, 경영계획규정 § 7) 그룹 경영목표 대한 구체적인 실무업무는 회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최종 승인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 § 11, 경영계획규정 § 11)

이에 따라 당사는 자회사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2016년 11월에 실무자 및 경영진이 초안을 마련하고, 당사 회장과 자회사 CEO로 구성된 제3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후 2016년 12월에 개최된 제8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2017년 그룹 경영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2017년 그룹 경영계획〉

1. 그룹 경영전략

- ① 경영방침 : 『Great Innovation 2017 : 미래성장 체제 확립 및 경영 효율성 강화』
- ② 경영슬로건 : 희망을 주는 행복한 금융
- ③ 경영화두 : 折箭之訓(절전지훈 / 모든 임직원이 단결하여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음)

2. 그룹 재무계획

- ① 그룹 총자산 : 111조원 내외
- ② 그룹 당기순이익 : 5,370억원 이상
- ③ ROA : 0.58% 이상
- ④ ROE : 7.53% 이상
- ⑤ BIS총자본비율 : 12.95% 이상
- ⑥ 실질고정이하여신비율 : 2.27% 이하

3. 그룹 전략과제

- ① 경영 효율성 극대화
- ② 질적 성장 및 수익 기반 강화
- ③ 미래 혁신금융 역량 강화
- ④ 사업라인별 차별화 전략 추진
- ⑤ 통합 리스크관리 기반 자본 효율성 제고
- ⑥ 그룹 시너지 창출 극대화
- ⑦ 그룹 기업문화 정립 및 사회적 책임경영 선도

이사회는 그룹 경영계획의 수행을 위해 경영진 성과평가에 그룹 경영계획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로 경영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여 그룹 경영계획 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 정관변경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안을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 15, 이사회규정 § 11)

이에 따라 2016년 3월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관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16년 3월 제2차 이사회 정관변경 주요내용>

1. 변경사유 : 지배구조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내용 반영하여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정관 반영
2. 주요 변경 내용
 - ① 사외이사의 겸직 제한 조항 변경
 - ②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 정관 반영

상기 정관변경 내용은 이사회 결의 후 201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지배구조법과 관련하여 정관 변경 사항은 2017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개정 할 예정입니다.

(다) 예산 및 결산승인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임직원 보수를 포함한 인건비, 물건비 등 경비예산 및 자본예산)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 15, 이사회규정 § 11, 경영계획규정 § 7) 이 경우 예산은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심의·의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예산은 2017년 그룹 경영계획과 함께 2016년 12월 제8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2017년 그룹 예산 편성 주요 내용〉

1. 경비예산 편성 (단위 : 억원)

인건비	준인건비	물건비	합계
5,293	1,450	3,155	9,898

2. 자본예산 편성 (단위 : 억원)

업무용부동산	업무용동산	무형자산	기타자산	합계	감가상각비
1,235	797	851	569	3,452	1,209

2016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2017년 1월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 2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2017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2월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16년 그룹 결산의 주요 내용〉

(단위 : 억원, %)

구분	목표	실적
당기순이익	5,400	5,016
총자산	1,061,690	1,063,579
자기자본	75,415	70,872
ROA	0.61	0.56
ROE	8.52	7.70
BIS총자본비율	12.21	12.86
실질고정이하여신비율	2.31	2.13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양수도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 15, 이사회규정 § 11)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당사는 법령준수, 건전경영,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 15, 이사회규정 § 11)

또한 이사회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인은 2016년도의 내부통제 체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2017년 2월에 개최된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을 결정하는 등 그룹 및 자회사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규정을 통해 그룹 리스크 철학 및 리스크관리 원칙을 정하고 리스크허용한도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조직을 통해 리스크분석 및 각종 리스크한도 준수 여부 등을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결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보다 자세한 역할 및 활동사항 등은 본문 7. 리스크관리위원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당사의 이사회는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 15, 지배구조 내부규범 § 11, 이사회규정 § 11)

이에 따라 2016년 3월 개최된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안)에 대해 논의하여 2016년 3월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8월 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6년 10월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비롯하여 총 14개 중요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사외이사, 감사위원, 회장 및 임원 후보를 추천하던 4개 위원회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배구조법을 반영하여 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 등 각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자회사의 임원 후보 추천 및 경영진 성과보상체계 관련 권한·기능을 법 취지에 맞추어 자회사가 직접 담당하게 되었으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 임면, 성과평가 등을 해당 규정에 반영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마련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절차 및 계획을 구체화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CEO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CEO 경영승계 세부 절차, CEO 자격요건 명시 등 경영승계 관련 절차의 체계적 구축을 통해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부합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0조에 따라 매년 사외이사 활동내역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 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를 정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당사의 이사회규정은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대주주 및 임원과의 거래 등이 지주회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도록 관리·감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활동>

- 2016. 2월 제1차 이사회 : BNK캐피탈 업무용 차량 렌탈 계약 승인
- 2016. 7월 제5차 이사회 : 그룹 IFRS 도입 자문 계약 체결 승인
- 2016. 10월 제6차 이사회 : 부산은행과의 임대차 계약 갱신 승인
- 2016. 12월 제8차 이사회 : 그룹사간 IT자원 통합구매 계약 및 BNK캐피탈 업무용 차량 렌탈 계약 심사 및 승인

또한, 2017년 2월에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서 2016년도에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내역 결과를 보고 받아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해상충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향후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 보호에 반하지 않도록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 기타

당사의 이사회는 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전체 자회사등을 통괄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토록 이사회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6조〉

1. 자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나. 구성(이사)

(1) 총괄

당사 이사회의 총원수는 15인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합니다(정관 § 34). 2016년 말 현재 이사 총원수는 7명으로 사내이사 2명(대표이사 회장, 부사장), 비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 총원수를 7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규모와 수행 업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수가 소수인 경우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구성원수가 16명 이상으로 다수인 경우 의사결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1명의 사내이사(정민주)가 연임되었고, 3명의 사외이사(김성호, 김우석, 문재우)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며, 1명의 사외이사(박홍대)가 중도사임함에 따라, 3명의 사외이사(문일재, 차용규, 김찬홍)를 신규 선임하였으며, 1명의 사외이사(김창수)는 연임되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습니다.(지배구조 내부규범 § 13) 사내·비상임이사는 경영의 연속성 제고 및 책임경영 차원에서 적절한 임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최고 임기를 제한한 사유는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만이 선임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자격요건으로는 첫째, 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둘째,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지배구조 내부규범 § 7) 당사는 2016년 10월 지배구조법을 반영하여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는 첫째, 금융, 경제, 법률,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둘째,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2016년말 현재 이사회는 이사의 출신 분야별로 금융 2명, 경제 2명, 경영 1명, 재무·회계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 중에서 선임되는 바, 현재 이사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당사 대표이사인 회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에 따라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로 김창수 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정관 § 43) 김창수 이사는 경제분야 전문가(부산대 무역학 교수,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장)로 2014년 3월에 당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어 사외이사 중 가장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한 점, 이사회 참여의 적극성 및 탁월한 경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16년 선임사외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① 이사회 의장 성세환

성세환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회장)로 당사 재임기간은 41개월(임기: 2013.8월~2019. 3월)이며, 현재 부산은행 은행장(2012. 3월~2018. 3월)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당사 부사장(2011.3월~2012.3월), 부산은행 부행장(2008.1월~2011.3월), 부산은행 부행장보(2007.1월~12월), 부산은행 지역본부장(2006.3월~12월), 부산은행 지점장(2001.3월~2006.2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동인은 사내이사로서 그룹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사회내 위원회로는 이사회운영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아닌 자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함에 따라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의 견제기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 중에서 별도 선임사외이사(김창수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정관 § 43)

② 이사 김창수

김창수 이사는 현재 선임사외이사로 당사 재임기간은 33개월(2014.3월~2017.3월)이며,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1992.3월~현재) 및 부산은행 사외이사(2013.8월~2017.3월) 등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2009.7월),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자문위원(2009.3월), (사)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2008.4월),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원장(2006.3월),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장(2005.7월), 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1998.9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 객원교수(1998.4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③ 이사 이봉철

이봉철 이사는 비상임이사로 당사 재임기간은 33개월(임기 : 2014.3월~2017.3월)이며, 롯데쇼핑 정책본부 경영지원실 부사장(2014.12월~2017.2월)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롯데쇼핑 정책본부 경영지원실 전무(2014.3월~2014.11월),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2012.6월~2014.2월), 롯데손해보험 전무(2011.6월~2012.5월), 롯데캐피탈 감사(2009.3월~2011.5월), 롯데쇼핑 정책본부 이사(2007.4월~2009.1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보수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회 위원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④ 이사 정민주

정민주 이사는 사내이사(부사장)로 당사 재임기간은 33개월(2014.3월~

2017.3월)입니다.

주요 경력은 부산은행 상임감사위원(2010.3월~2014.2월),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2008.7월~2009.2월),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장(2006.5월~2008.6월), 금융감독원 조사연구실장(2005.1월~2006.4월),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부국장(2002.2월~2004.12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⑤ 이사 문일재

문일재 이사는 사외이사로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당사 재임기간은 9개월(2016.3월 ~ 2018.3월)입니다.

주요 경력은 현재 대한석유협회 부회장(2016.10월~현재)을 역임하고 있으며, 호텔신라 상근감사(2013.3월~2016.2월), 연합자산관리 감사(2009.10월~2013.3월), 조달청 차장(2008.7월~2009.9월), 기획재정부 규제개혁 팀장(2008.3월~2008.7월), 재정경제부 기획국 국장(2007.8월~2008.3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⑥ 이사 차용규

차용규 이사는 사외이사로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당사 재임기간은 9개월(2016.3월 ~ 2018.3월)입니다.

주요 경력은 (주)하림홀딩스 감사(2012.12월~2015.3월), (주)선진지주 감사(2011.1월~2012.12월), (주)미디어 OBS 부회장(2010.4월~2011.6월), OBS

경인TV 대표이사(2009.2월~2010.3월), ubc울산방송 대표이사(1998.2월~2003.6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⑦ 이사 김찬홍

김찬홍 이사는 사외이사로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당사 재임기간은 9개월(2016.3월 ~ 2018.3월)이며, 현재 명지대학교 경영학 교수(2014.9월~현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한국회계기준원 IFRS 상임위원(2008.3월~2014.3월),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2002.6월~2008.2월),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2001.3월~2002.5월), 국립세무대학 회계학 교수(1984.5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⑧ 이사 김성호

김성호 이사는 사외이사로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당사 재임기간은 60개월(2011.3월~2016.3월)이며,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2007.12월~현재)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법무부 장관(2006.8월~2007.9월),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2004.1월~2006.8월), 대구·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2003.3월~2004.1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

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⑨ 이사 김우석

김우석 이사는 사외이사로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당사 재임기간은 60개월(2011.3월~2016.3월)이며, 예일회계법인 회장(2008.1월~현재)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2005.1월~2007.12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2003.6월~2004.12월), 한국은행 감사(2000.5월~2003.6월), 세무대학 학장(1997.7월~2000.5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⑩ 이사 문재우

문재우 이사는 사외이사로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당사 재임기간은 24개월(2014.3월~2016.3월)이며,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2013.11월~현재)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손해보험협회 회장(2010.8월~2013.8월), 금융감독원 감사(2007.7월~2010.7월),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2005.12월~2007.7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2004.9월~2005.12월), 기획행정실장(2002.6월~2003.5월),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제총괄 과장(1999.1월~2001.4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로는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⑪ 이사 박홍대

박홍대 이사는 사외이사로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사임하였습니다. 당사 재임기간은 12개월(2015.3월~2016.3월)이며, 법무법인 유석의 대표변호사(2016.2월~현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부산고등법원 법원장(2013.2월~2016.2월), 부산선거관리위원회 35대 위원장(2011.3월~2013.1월), 부산지방법원장(2011.2월~2013.2월), 제주지방법원장(2010.2월~2011.2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2009.2월~2010.2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3) 요약

성명	상임/ 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성세환	상임	회장, 이사회 의장	13.08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現) 12.03 부산은행 은행장(現) 11.03 BS금융지주 부사장 08.01 부산은행 부행장 07.01 부산은행 부행장보 06.03 부산은행 지역본부장	13.08.14	19.3월 정기주총	41개월	운영위 임추위
김창수	사외	리스크 위원장 임추위 위원장	13.08 부산은행 사외이사(現) 09.07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 09.03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 자문위원 08.04 (사)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06.03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장 92.03 부산대 무역학부 교수(現)	14.03.28	17.3월 정기주총	33개월	운영위 리스크 임추위 감사위
이봉철	비상임	-	14.12 롯데쇼핑 정책본부 부사장(現) 14.03 롯데쇼핑 정책본부 전무 12.06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11.06 롯데손해보험 전무 09.03 롯데캐피탈 감사 07.04 롯데쇼핑 정책본부 이사	14.03.28	17.3월 정기주총	33개월	보수위 임추위

성명	상임/ 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정민주	상임	부사장	14.03 BNK금융지주 부사장(現) 10.03 부산은행 상임감사위원 08.07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06.05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장 05.01 금융감독원 조사연구실장 02.02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부국장	14.03.28	17.3월 정기주총	33개월	리스크
문일재	사외	보수 위원장	16.10 대한석유협회 부회장(現) 09.10 연합자산관리(주) 감사 08.07 조달청 차장 08.01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07.07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 기획국장 02.10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 국장	16.03.28	18.3월 정기주총	9개월	운영위 리스크 보수위 임추위 감사위
차용규	사외	-	12.12 (주)하림홀딩스 상임감사 11.01 (주)선진지주 상임감사 10.04 (주)미디어 OBS 부회장 09.02 OBS 경인TV(주) 대표이사 98.02 UBC울산방송(주) 대표이사 91.01 한창그룹 기획조정실 이사	16.03.28	18.3월 정기주총	9개월	리스크 보수위 감사위
김찬홍	사외	운영 위원장 감사 위원장	14.09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現) 08.03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02.06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 01.03 국세공무원교육원 회계학 교수 84.05 국립세무대 회계학 교수	16.03.28	18.3월 정기주총	9개월	운영위 리스크 보수위 임추위 감사위
김성호	사외	회추위 위원장	08.03 국가정보원 원장 07.12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現) 06.08 법무부 장관 04.01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03.03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03.03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1.03.15	16.03.25	60개월	리스크 보수위 임추위 감사위 회추위
김우석	사외	운영 위원장 리스크 위원장	08.01 예일회계법인 회장(現) 05.01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03.06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00.05 한국은행 감사 99.07 세무대학 학장 99.01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98.03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장	11.03.15	16.03.25	60개월	운영위 보수위 사추위 임추위 감사위 회추위

성명	상임/ 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문재우	사외	감사 위원장	13.11 법무법인 율촌 고문(現) 10.08 손해보험협회 회장 07.07 금융감독원 감사 05.12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04.09.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02.06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	14.03.28	16.03.25	24개월	운영위 보수위 사추위 임추위 감사위 회추위
박흥대	사외	사추위 위원장	15.02 법무법인 유석 대표변호사(現) 13.02 부산고등법원장 11.03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1.02 부산지방법원장 10.02 제주지방법원장 09.02 부산시방법원동부지원장	15.3.27	16.03.25	12개월	리스크 보수위 사추위 회추위

※위 표에서 사용된 각종 위원회의 약칭의 정식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위 : 이사회운영위원회 / 리스크 : 리스크관리위원회 / 보수위 : 보수위원회 / 임추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추위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 : 감사위원회 / 회추위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16년에는 총 9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어 결의안건 35건, 보고안건 28건으로 총 63건의 안건을 결의 및 보고 받았으며,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7%로, 당초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사회 참석률 목표치인 80%를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33회 소집되어 결의안건 50건, 보고안건 8건을 결의 및 보고 받았으며, 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96%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이하 ‘이사회 등’ 이라 한다) 운영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이사회 등 개최 전 의안에 대해 이사들에게 사전설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들의 의견 및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회 등 개최 전에 반영하여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와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6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 2016. 2. 3.(수) 11:30 -12:10

[안전 통지일 : 2016년 1월 26일(화)]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성호	김우석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박홍대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경영진 임면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2015년도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거래내역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2015년도 사외이사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준법감시인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제5기(2015년도) 결산 결과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부산은행 및 경남은행 출자(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당사와 BNK캐피탈간 포괄거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6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 2016. 3. 3.(목) 12:10 -13:00

[안전 통지일 : 2016년 2월 24일(수)]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성호	김우석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박홍대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 제2차 유상증자 및 자회사 출자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전									
가. 2015년도 지주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지주 장기성과 현금보상 성과평가 확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지주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지주 장기성과 현금보상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경남은행 주식매매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상임이사 후보 확정(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확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아.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정관 일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사외이사운영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카.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 사항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이외의 후보 확정에 대한 찬성 표시(본임 선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다) 2016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 2016. 3. 25.(금) 11:20 -13:20

[안건 통지일 : 2016년 3월 17일(목)]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이사회내 위원회별 위원장 선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이사회 운영 및 사외 이사 활동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사외이사 기부금 지원 내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대표이사 회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이사회 의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선임사외이사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이사회내 위원회별 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16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 2016. 5. 4.(수) 11:00 -11:50

[안전 통지일 : 2016년 4월 26일(화)]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2016년도 1/4분기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그룹 고객정보 관리업 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리스크관리위원회 결 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2016년도 자회사별 경영진 성과평가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경영진 장기성과 평가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2016년도 경영진 단 기성과 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경영진 장기성과 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16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 : 2016. 7. 28.(목) 11:30 -12:10

[안전 통지일 : 2016년 7월 22일(금)]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 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16년 상반기 가결 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그룹 고객정보관리업 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BNK투자증권 출자 (안)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거래 승인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2016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 2016. 10. 7.(금) 10:00 -10:20

[안건 통지일 : 2016년 9월 26일(월)]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부산은행과의 임대차 계약 갱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2016년도 제7차 정기이사회 : 2016. 10. 28.(금) 11:20 -12:00

[안건 통지일 : 2016년 10월 18일(화)]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6년 3/4분기 가 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BNK투자증권 출자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그룹 고객정보관리업 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리스크관리위원회 결 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지배구조법 관련 중요 내규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중요 내규 관련 세부 기준 등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2016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 : 2016. 12. 16.(금) 11:20 -12:00

[안전 통지일 : 2016년 12월 7일(수)]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16년 회사채 발행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2017년도 감사 업무 계획 수립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리스크관리위원회 결 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2017년도 경영 계획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2017년 회사채 발행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2017년 지주-자회사 간 포괄거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2016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 : 2016. 12. 28.(수) 10:40 -11:00

[안전 통지일 : 2016년 12월 20일(화)]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 의결안건								
가.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BNK금융지주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에 전년도 이사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전략제시 능력, 위기관리 대응 능력, 경영통제 및 감독의 효율성, 이사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이사회 운영 및 안전의 적절성,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이사 전원과 이사회 지원업무 담당본부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의 도출을 통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 및 연간 계획 수립 시 활용됩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 경에 전년도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정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점수는 항목별 10점 만점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차등 배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위원회 위원 전원과 지원업무 담당본부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서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BNK금융지주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결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자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배구조법 제13조에 의거 사외이사 중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당사는 성세환 現 BNK금융지주 회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 및 지원, 원거리 본점 소재에 따른 사외이사 부담 경감, 안건의 적시성 및 충실한 의안 설명과 자료 제공 등을 위해 사내이

사를 이사회장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외이사가 아닌자가 이사회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당사는 2016년 3월 제 3차 이사회에서 김창수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김창수 사외이사는 경제분야 전문가이면서 당사의 사외이사로 3년간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은행 사외이사과 겸직 중으로서 당 그룹의 상황에 밝고, 사외이사 전체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나. 구성

다. 선임기준

라. 활동내역 및 평가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2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원으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하고, 그룹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임원 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3명을 포함한 총 5명의 위원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대표이사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및 점검·보완,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 발굴·관리 및 자격요건 검증 내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6)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 인선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동 위원회로 통합되기 前(위원회 통합 : 2016.10.28)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4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2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최고경영자 승계절차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경영승계절차 개시,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 및 자격검증 실시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회장의 중도사임 의사표시에 따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 現 성세환 회장을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5명(김성호, 김우석, 문재우, 김창수, 박홍대)의 임기만료 또는 중도사임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및 관리를 통해 후보자 추천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총 3회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 POOL-IN/OUT 실시, 예비후보군 선정, 자격검증 실시, 사외이사 재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검토 등을 논의 하였으며, 그 결과 총 4명(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을 사외이사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나. 구성

당사는 2016.10.28 제7차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법을 반영하여 기존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외 대표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60%로서,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후보추천 및 관리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6년말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현직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약력
김창수	사외	위원장	16.03.25~17.03.24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現)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
성세환	상임	위원	16.03.25~17.03.24	BNK금융지주 회장(現) 부산은행 은행장(現)
문일재	사외	위원	16.03.25~17.03.24	대한석유협회 부회장(現) 조달청 차장
김찬홍	사외	위원	16.03.25~17.03.24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現)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봉철	비상임	위원	16.03.25~17.03.24	롯데쇼핑 부사장(現)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당사 대표이사 회장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서 정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적극적 자격요건]

-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시킬수 있는 자
-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 리더십, 전문성, 대외 인지도 및 세평 등이 양호한 자

또한 최고경영자 이외에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요건 역시 당사 정관 제37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외이사 자격요건]

- 소극적 자격요건 :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적극적 자격요건
 - 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유무
 - 직무 공정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 윤리 책임성 :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 충실성 :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경영자 선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한 절차를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및 사외이사운영규정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법령 및 당사 내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으며,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지배구조법 제33조 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의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회사는 직무대행자를 즉시 선임하고 지체없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사는 사내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따라 성과평가 및 보상 절차를 마련하고 경영진 성과평가 계약체결을 실시하여, 그 기준에 의거 평가 대상자별 성과평가 및 보상 결과를 심의·결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평가는 매 익년도 1~2월에 실시하며 이사의 역량 및 전문성,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회사 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6년도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6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총 12건의 안건을 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4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총 4건의 안건을 가결하였으며,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2회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가결하였으며,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회를 개최하여 총 3건의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16.10.28 제7차 이사회를 통해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하였습니다.

2016년 1월 29일 개최된 제1차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BNK투자증권, BNK캐피탈, BNK저축은행, BNK신용정보, BNK시스템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2016년 2월 자회사별 주주총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 2월 3일 개최된 제1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였고, 2016년 2월 17일 개최된 제2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당사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現 성세환 회장의 연임을 추천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3일 및 2016년 2월 17일 개최된 제1차 및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기존 사외이사의 임기만료 등에 따라 사외이사 예비후보군을 압축하였고, 2016년 3월 3일 제3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신임 3명(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연임 1명(김창수)을 후보

로 추천하였으며, 당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16.10.28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개정]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명칭 변경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통합(4개 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2016년 제1차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6. 1. 29.(금) 10:40 -11: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성호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BNK투자증권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BNK캐피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 추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BNK캐피탈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BNK저축은행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BNK신용정보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BNK시스템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2차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6. 2. 3.(수) 12:10 -12: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성호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경남은행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추진(안)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가결

2016년 제3차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6. 2. 17.(수) 12:30 -13: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성호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경남은행 은행장 후보 추천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나.경남은행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4차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6. 3. 3.(목) 11:50 -12:1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성호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지주 상임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5차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6. 7. 28.(목) 11:20 -11: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창수	문일재	김찬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위원장 변경(안)	찬성	불참	의결권 제한 ^㉞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선임건으로 의결권 제한

2016년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6. 12. 16.(금) 11:10 -11:2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창수	문일재	김찬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16. 2. 3.(수) 11:10 -11: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우석	문재우	박홍대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예비 후보군 선정(안)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16. 2. 17.(수) 11:40 -12: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우석	문재우	박홍대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사외이사 예비후보군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3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16. 3. 3.(목) 10:30 -11: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우석	문재우	박홍대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4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16. 3. 25.(금) 12:00 -12:1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위원장 선임	의결권 제한 ^{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선임건으로 의결권 제한

2016년 제1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16. 2. 3.(수) 12:30 -13: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성호	김우석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박홍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불참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BNK금융지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추진(안)	불참 [㉠]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주)후보군 본인 포함으로 의결권 제한 및 회의 미참가

2016년 제2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16. 2. 17.(수) 12:00 -12: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성호	김우석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박홍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후보 추천	불참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후보군 본인 포함으로 의결권 제한 및 회의 미참가

2016년 제3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16. 3. 25.(금) 12:30 -12:4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선임건으로 의결권 제한

2016년 제1차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6. 3. 3.(목) 11:00 -11:2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성호	김우석	문재우	김창수	박홍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감사위원회위원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주)	찬성	가결

(주)본인 외 후보추천에 대한 찬성 표시(본인 재선임 건에 대한 의결권 제한)

2016년 제2차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6. 3. 25.(금) 12:20 -12: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주)	찬성	가결

(주)본인 선임건으로 의결권 제한

(3) 평가

BNK금융지주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에 전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

건의 적정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 전원과 위원회 지원업무 담당본부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의 도출을 통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 및 연간 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성 세 환

② 출생연도 : 1952년

③ 출신학교 : 배정고 - 동아대 경제학과 - 동아대 국제중재학 석사

④ 경력

2013. 08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現)

2012. 03 부산은행 은행장(現)

2011. 03 BS금융지주 부사장

2008. 01 부산은행 부행장

2007. 01 부산은행 부행장보

2006. 03 부산은행 지역본부장

2001. 03 부산은행 지점장

1979. 01 부산은행 입행

(나) 후보 제안자

성세환 후보는 당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에 따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었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는 1979년 부산은행에 입행하여 동행 본부장, 부행장 등을 거쳐 2012년 3월에 은행장으로 취임하였으며, 2013년 8월부터는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 이후 안정적인 경영실적을 꾸준히 달성해 왔으며, 경남은행의 자회사 편입, 자산운용업 진출, 자회사(부산은행, BNK캐피탈)의 해외진출 등의 성공을 통해 BNK금융지주가 대한민국 대표 지역금융그룹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BNK금융지주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 및 통찰력, 리더십,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2015년에 수립한 중장기 경영계획의 추진 및 조직의 연속성과 안정적 경영을 위해 후보자의 대표이사 회장 연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후보자 역량 및 법률적 자격 요건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성세환 후보는 당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의 후보군에 포함되어 경영승계 절차 개시 후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을 담당하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소극적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없음
2. 적극적 요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제4조		충족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자
		충족	금융산업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충족	공익성 및 건전경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

(주) 지배구조법 시행(2016.8.1) 前 관련 법령 의거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성세환 후보자에 대한 최고경영자 추천을 위해 2016년 2월 3일 제1차, 2016년 2월 17일 제2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후보 추천 일정 및 절차, 후보군 Pooling 검토, 단독 후보 결정 심의, 후보자 면접 등 실시 여부, 후보군 자격요건 개요적 검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제2차 위원회에서는 정밀 자격 검증 실시를 통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당사에서 정하는 최고경영자 적극적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후보자의 금융업에 대한 지식과 위기대응 능력, 후보자의 경영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내실 경영 의지 등 종합적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세환 후보자를 최고경영자 후보로 이사회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후보

1) 김창수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사항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김 창 수

② 출생연도 : 1955년

③ 출신학교 : 경남고 - 부산대 무역학 학사 - 부산대 경제학 석사 -
美 댈러스대 경제학 박사

④ 경력

2014. 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2013. 08 부산은행 사외이사(現)
2009. 07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
2009. 03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자문위원
2008. 04 (사)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2006. 03 부산국제전문대학원 원장
1992. 03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現)

⑤ 사외이사 경력

㉠ 근무기간 : 2014. 3. 28 ~ 현재

㉡ 근무기간 중 출석률

-이사회 총 30회 중 29회 참석(참석률 97%)
-이사회운영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13회 중 13회 참석(참석률 100%)
-보수위원회 총 6회 중 6회 참석(참석률 100%)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6회 중 6회 참석(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총 15회 중 총 14회 참석(참석률 9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14회 중 총 14회 참석(참석률 100%)

㉔활동기간 동안 결정한 주요 사안

-이사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제1차 유상증자 신주 발행, 회사채 발행 계획 승인, 경남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그룹 경영계획 승인, 자회사 출자 승인, 지배구조 모범규준 관련 중요규정 제·개정, 경남은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승인, 신종 자본증권 발행 승인, 제2차 유상증자 추진 승인,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 승인,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 회장 승인, 지배구조법 관련 중요규정 개정 등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 승인,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 기준 제정, 위원장 선임 등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리스크관리협의회 규정 개정, 경남은행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리스크 점검, 신종자본증권 발행관련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 수립,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관련 공시정책 승인, 그룹 내부등급법 신용리스크 통제조직 운영 승인 등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경영진 장·단기 성과평가 확정, 성과평가 기준 개정, 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제정, 경영진 성과평가 계약 체결, 자회사 성과평가 기준 개정 승인 등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업무 계획 수립 승인,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적정성 평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감사업무규정 개정,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검토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부산은행 은행장 후보 추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지주 사내이사 후보 추천, 경남은행 및 BNK캐피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 추진, 경남은행 은행장 후보 추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예비후보군 선정, BNK금융지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추진,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후보 추천 등

(나) 후보 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구 분	시 기	후보 제안자	후보제안자 주요 경력(현직 포함)	임추위 위원장 여부
재선임	2016. 3월	박홍대	2015.03 前 BNK금융지주 사외이사(16.3월 퇴임) 2015.02 現 법무법인 유석 대표변호사 2013.02 前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부
신임	2014. 3월	임영록	2013.08 前 BNK, 금융지주 사장 2012.03 前 BNK금융지주 부사장 2008.01 前 부산은행 부행장	부

②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박홍대는 2015년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후보자인 김창수 이사와 1년 동안 사외이사로 같이 근무하였고, 동 기간 동안 이사회 14회, 리스크관리위원회 12회, 보수위원회 3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3회를 함께 참석하였으며, 회사 업무상 교류 외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2014년 3월 최초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 제안한 임영록 이사와 김창수 후보자 역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김창수는 무역 및 경제 관련 전공자로서 경제와 금융 전반에 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 자문위원,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장 등을 역임하는 등 전문성과 사회적 신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관련법령 및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동 후보자가 최근 2년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부산대학교의 경우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가 없어 이해상충 문

제의 발생 소지는 없습니다.

후보자는 2014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충분한 회의자료 검토 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 수준(S등급)으로 당사 사외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고, 회사 내부통제와 경영진 견제 역할도 훌륭히 수행하는 등 BNK금융그룹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재선임을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후보자는 2014년 3월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 되어 그간의 수행 능력과 실적을 인정 받았으며, 2016년 2월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예비후보군으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월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재선임을 위한 후보자 검토보고서 심의 후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사외이사 최종 후보로 추천 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후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한 부산대학교와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는 없습니다.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① 소극적 요건

—관련법령

- ㉠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2항

—평가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후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한 부산대학교와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는 없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관련법령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37), 지배구조 내부규범 (§ 7~8)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 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경제분야 전문가이며 내규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 8)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 4)에서 사외이사 선임 시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유무
- 직무 공정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 윤리성, 책임성 :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 충실성 :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 전문성

후보자는 무역 및 경제 관련 전공자로서 금융 및 경제 전반에 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자문위원,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제·금융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㉔ 직무공정성

후보자가 최근 2년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부산대학교의 경우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가 없고,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㉕ 윤리성, 책임성

후보자는 지역 국립대학교에서 교수 활동과 사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신망과 우수한 평판을 얻어왔고, 현재 감사위원으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경영진에 개진하고 있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㉖ 충실성

당사 정관 제 37조에서는 당사와 소속 자회사등의 사외이사를 제외한 후보자의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현재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지 않고 있어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후보자는 당사의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등 100% 출석하였습니다.

④ 본인 소명

본인은 관련법령 및 회사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이 근무 중인 부산대학교는 BNK금융지주 및 BNK금융지주의 자회사와 이해상충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경력 및 전문성 감안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김창수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을 위해 2016. 2. 3 및 2016. 2.17 제 1차 및 제2차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위원에게 사외이사 후보군 관련 자료 검토 및 후보군 중 예비후보군을 선정하였으며, 사외이사 예비후보군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2.3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졌습니다.

2016. 3. 3 제3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재선임대상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를 심의하여 소극적 및 적극적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논의 하였으며,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 결의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16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4명으로, 이중 1명이 연임하였으며 재임 여부 평가 결과 사외이사 연임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평가주체 : 이사회

○평가시기 : 매년 3월 이내

○평가항목 : 역량 및 전문성,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회사 발전 기여도

○평가방법 : 자기평가(20%) + 이사회평가(50%) + 직원평가(20%) + 참석률(10%)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등 출석률 ^(주)	평가 여부
김창수	14.3월~16.3월	여	100%	탁월(S)

(주)이사회 출석률 대상기간 : 2015.1.1 ~ 2015.12.31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김창수 사외이사는 무역 및 경제 관련 전공자로서 경제와 금융 전반에 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 자문위원,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 등을 겸직하는 등 전문성과 사회적 신망이 높습니다.

김창수 사외이사는 당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률이 우수하고,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로 당사 사외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등에서도 회의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사전에 준비하여 회의시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하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김창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그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로서 당사 사외이사 후보로서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12]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문일재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사항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문 일 재

② 출생연도 : 1955년

③ 출신학교 : 서울고 - 서울대 경영학 학사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
美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④ 경력

2016. 10 대한석유협회 부회장(現)

2016. 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2013. 03 호텔신라 상근감사

2009. 10 연합자산관리(주) 감사
2008. 07 조달청 차장
2008. 01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2007. 07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 기획국장
2002. 10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 국장

⑤ 사외이사 경력

㉞ 근무기간 : 2016. 3. 25 ~ 현재

㉟ 근무기간 중 출석률

- 이사회 총 7회 중 7회 참석(참석률 100%)
- 이사회운영위원회 총 1회 중 1회 참석(참석률 100%)
-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5회 중 5회 참석(참석률 100%)
- 보수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 감사위원회 총 4회 중 총 4회 참석(참석률 100%)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2회 중 총 2회 참석(참석률 100%)

㊱ 활동기간 동안 결정한 주요 사안

-이사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 회장 선임, 분기별 가결산 결과 점검, BNK투자증권 출자 승인, 지배구조법 관련 중요규정 개정 승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2017년 경영계획 및 회사채 발행 계획 승인 등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 승인, 위원장 선임 등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관련 공시정책 승인, 리스크관리 제규정 개정 승인, 그룹 내부등급법 신용리스크 통제조직 운영 승인, 2017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 승인 등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경영진 장기성과 평가 및 보상 확정, 경영진 장·단기 성과계약 체결, 경영진 성과평가 기준 개정, 자회사 성과평가 기준 개정 승인 등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위원장 선임, 감사 실적 및 결과 보고,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계획 보고, 2017년도 감사 업무계획 수립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위원장 변경 승인,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등

(나) 후보 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구 분	시 기	후보 제안자	후보제안자 주요 경력(현직 포함)	임추위 위원장 여부
신임	2016. 3월	정민주	2014.03 現 BNK,금융지주 부사장 2010.03 前 부산은행 상임감사위원 2008.07 前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부

②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자는 2016년 3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신규 후보 추천된 경우로 후보제안자인 정민주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문일재는 재정경제부, 대통령 비서실 등 공직에서 약 30년간 경제정책 기획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경제 관련 폭넓은 식견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후보자는 관련법령 및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동 후보자가 최근 2년내 상근으로 근무한 호텔신라(2016.3월 퇴임)는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가 없어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소지는 없습니다.

당사는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초 3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리중인 후보군 중에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동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오랜 공직생활을 성실히 해오며 명예롭게 퇴임하여 당사에서도 윤리성 및 책임감을 가지고 사외이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향후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후보자는 2016년 2월 제1차 및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기존의 후보군 그룹 중 사외이사 예비후보군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3월 제3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자질 및 자격검증 심의 후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사외이사 최종 후보로 추천 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후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중인 대한석유회社 및 호텔신라(2016.3월 퇴임)와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는 없습니다.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① 소극적 요건

一 관련법령

㉞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㉔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㉕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2항

—평가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후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한 호텔신라와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 거래는 없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관련법령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37), 지배구조 내부규범 (§ 7~8)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 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경제분야 전문가이며 내규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 8)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 4)에서 사외이사 선임 시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유무
- 직무 공정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 윤리성, 책임성 :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 충실성 :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㉔ 전문성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 비서관, 조달청 차장 등 공직에

서 약 30년간 경제정책기획 업무를 담당하여 경제 관련 폭넓은 식견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경제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㉔직무공정성

후보자는 기존 소속된 법인과 당사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㉕윤리성, 책임성

후보자는 오랜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인품과 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사회적 신망을 갖춘 자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㉖충실성

후보자는 현재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를 겸직하지 않고 있어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 본인 소명

본인은 관련법령 및 회사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이 근무 중인 대한석유협회 및 최근 2년 이내 근무한 호텔신라와는 BNK금융지주 및 BNK금융지주의 자회사와 이해상충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경력 및 전문성 감안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문일재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을 위해 2016. 2. 3 및 2016. 2.17 제1차 및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은 사외

이사 후보군 관련 자료 검토 및 후보군 중 예비후보군을 선정하고 사외이사 예비후보군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 3. 3 제3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소극적 및 적극적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논의 하였으며,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 결의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4명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후보자는 2016년에 최초로 사외이사에 선임되어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3) 차용규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사항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차 용 규

② 출생연도 : 1949년

③ 출신학교 : 영남상고 - 동아대 경영학 학사 - 부산대 경영대학원 수료

④ 경력

2016. 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2012. 12 (주)하림홀딩스 감사

2010. 04 (주)미디어 OBS부회장

2009. 02 OBS 경인TV(주) 대표이사

1998. 02 ubc울산방송(주) 대표이사

1991. 01 한창그룹 기획조정실 이사

⑤ 사외이사 경력

㉔ 근무기간 : 2016. 3. 25 ~ 현재

㉕ 근무기간 중 출석률

- 이사회 총 7회 중 7회 참석(참석률 100%)
-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5회 중 5회 참석(참석률 100%)
- 보수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 감사위원회 총 4회 중 총 4회 참석(참석률 100%)

㉖활동기간 동안 결정한 주요 사안

-이사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 회장 선임, 분기별 가결산 결과 점검, BNK투자증권 출자 승인, 지배구조법 관련 중요규정 개정 승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2017년 경영계획 및 회사채 발행 계획 승인 등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관련 공시정책 승인, 리스크관리 제규정 개정 승인, 그룹 내부등급법 신용리스크 통제조직 운영 승인, 2017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 승인 등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경영진 장기성과 평가 및 보상 확정, 경영진 장·단기 성과계약 체결, 경영진 성과평가 기준 개정, 자회사 성과평가 기준 개정 승인 등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위원장 선임, 감사 실적 및 결과 보고,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계획 보고, 2017년도 감사 업무계획 수립 등

(나)후보 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구 분	시 기	후보 제안자	후보제안자 주요 경력(현직 포함)	임추위 위원장 여부
-----	-----	--------	--------------------	------------

신임	2016. 3월	문재우	2013.11 現 법무법인 율촌 고문 2010.08 前 손해보험협회 제51대 회장 2007.07 前 금융감독원 감사	부
----	----------	-----	--	---

②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자는 2016년 3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신규 후보 추천된 경우로 후보제안자인 문재우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차용규는 상장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리부장 및 임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회계·재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ubc 울산방송(주) 대표이사, 한국민영방송협회 감사, (주)미디어 OBS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경험과 사회적 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관련법령 및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동 후보자가 최근 2년내 상근으로 근무한 곳은 없어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소지는 없습니다.

후보자는 상법 및 당사 내규에 의거 주주 추천을 통해 2016년 3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 검증 후 동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는 CEO 활동 경험과 상장법인의 감사 경력 등을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전체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후보자는 2016년 2월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주주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 예비후보군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3월 제3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검증 심의 후 당사 내규 및 법령에 의거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후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중인 곳은 없어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이해상충 소지는 없습니다.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① 소극적 요건

—관련법령

- ㉠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2항

—평가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후보자가 최근 2년 내 근무중인 회사는 없어 이해상충 문제는 없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관련법령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37), 지배구조 내부규범 (§ 7~8)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 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회계분야 전문가이며 내규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8)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사외이사 선임 시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유무
- 직무 공정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 윤리성, 책임성 :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 충실성 :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 전문성

후보자는 (주)한창에서 10년 이상 경리부장 및 임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회계·재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ubc 울산방송(주) 대표이사, OBS 경인TV(주)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경험과 사회적 명성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 회계 및 재무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후보자는 현재 별도 소속된 법인 없이 당사의 사외이사직만 수행하고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윤리성, 책임성

후보자는 대표이사로서의 활동 경험과 상장법인의 재무 및 감사 경력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명성과 높은 인품을 갖춘 자이며,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㉔충실성

후보자는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등 100% 출석하였으며,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④ 본인 소명

본인은 관련법령 및 회사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은 다른 회사의 상근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BNK금융지주 및 그 자회사와 이해상충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경력 및 전문성 감안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차용규 후보자는 2016년 2월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주주 추천을 통한 사외이사 예비후보군에 선정되었으며 법령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을 검증 하였습니다.

2016년 3월 제3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주주 추천에 따라 법령 및 당사 내규에서 정한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외이사 후보자로 최종 추천 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후보자는 2016년에 최초로 사외이사에 선임되어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4) 김찬홍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사항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김 찬 홍

② 출생연도 : 1956년

③ 출신학교 : 경기고 - 서울대 경영학 학사 - 美 워싱턴대 MBA 석사 -
서울대 경영학(회계학) 박사

④ 경력

2016. 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2014. 09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現)
2008. 03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2002. 06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
2001. 03 국세공무원교육원 회계학 교수
1984. 05 국립세무대학 회계학 교수

⑤ 사외이사 경력

㉠ 근무기간 : 2016. 3. 25 ~ 현재

㉡ 근무기간 중 출석률

-이사회 총 7회 중 7회 참석(참석률 100%)
-이사회운영위원회 총 1회 중 1회 참석(참석률 100%)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5회 중 5회 참석(참석률 100%)
-보수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총 4회 중 총 4회 참석(참석률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2회 중 총 2회 참석(참석률 100%)

㉢ 활동기간 동안 결정한 주요 사안

-이사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 회장 선임, 분기별 가결산 결과 점검, BNK투자증권 출자 승인, 지배구조법 관련 중요규정 개정 승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2017년 경영계획 및 회사채 발행 계획 승인 등
-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 승인, 위원장 선임 등
-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관련 공시정책 승인, 리스크관리 제규정 개정 승인, 그룹 내부등급법 신용리스크 통제조직 운영 승인, 2017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 승인 등
-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 경영진 장기성과 평가 및 보상 확정, 경영진 장·단기 성과계약 체결, 경영진 성과평가 기준 개정, 자회사 성과평가 기준 개정 승인 등
-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 위원장 선임, 감사 실적 및 결과 보고,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계획 보고, 2017년도 감사 업무계획 수립 등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
 - : 위원장 변경 승인,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등

(나) 후보 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구 분	시 기	후보 제안자	후보제안자 주요 경력(현직 포함)	임추위 위원장 여부
신임	2016. 3월	김우석	2008.01 現 예일회계법인 회장 2005.01 前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1999.01 前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부

②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자는 2016년 3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신규 후보 추천의 경우로 후보제안자인 김우석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김찬홍은 美 워싱턴대 MBA(회계학), 서울대 경영학 박사를 거쳐 국립 세무대학 교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명지대 회계학 교수를 역임하는 등 회계·재무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후보자는 관련법령 및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동 후보자가 최근 2년내 상근으로 근무한 명지대학교는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가 없어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소지는 없습니다.

당사는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초 3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리중인 후보군 중에서 회계·재무 분야에서 가장 역량 있는 동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회계·재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후보자는 2016년 2월 제1차 및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기존의 후보군 그룹 중 사외이사 예비후보군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3월 제3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자질 및 자격검증 심의 후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사외이사 최종 후보로 추천 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후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중인 명지대학교와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는 없습니다.
②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① 소극적 요건

—관련법령

- ㉠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2항

—평가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후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중인 명지대학교와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는 없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관련법령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37), 지배구조 내부규범 (§ 7~8)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 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집행·회계분야 전문가이며 내규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8)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사외이사 선임 시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유무
- 직무 공정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 윤리성, 책임성 :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 충실성 :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 전문성

후보자는 미 워싱턴대 MBA(회계학전공), 서울대 경영학(회계학) 박사를 거쳐 국립세무대학교 교수(회계학),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을 거쳐 현재 명지대학교 회계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회계·재무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 직무공정성

후보자가 소속된 명지대학교는 현재 당사와 거래관계가 없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 할 여지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윤리성, 책임성

후보자는 대학교 및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오랜 연구 및 교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신망과 우수한 평판을 얻어왔고,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충실성

후보자는 오랜 교수직의 경험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본인 소명

본인은 관련법령 및 회사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이 근무 중인 명지대학교는 BNK금융지주 및 BNK금융지주의 자회사와 이해상충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경력 및 전문성 감안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김찬홍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을 위해 2016. 2. 3 및 2016. 2.17 제 1차 및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 후보군 관련 자료 검토 및 후보군 중 예비후보군을 선정하고 사외이사 예비후보군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 3. 3 제3차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소극적 및 적극적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논의 하였으며,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 결의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4명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후보자는 2016년에 최초로 사외이사에 선임되어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①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사는 지역 금융회사의 특성상 지역 내에서 적합한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

하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원부서의 후보군 발굴 활동, 사외이사 및 경영진의 추천과 외부로부터의 추천 및 지역의 주요 인사 접촉 등을 통해 적합한 후보군을 발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2015년 2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등을 개정하여 주요 사항을 반영 하였으며, 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후보군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원칙으로는 위원회는 특정 배경 및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고,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6, 사외이사운영규정 §7조)

첫째, 경영진 또는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주기적으로 위원회에 제공하고

둘째, 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내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공정하게 검증하며

셋째,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하고

넷째, 위원회가 사외이사 재선임을 위해 후보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등 후보군 관리내역을 이사회 보고 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군 선발기준 및 관리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2015년 10월 수립되어 제3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015.11.6)에서 결의되었습니다.

②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당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 원칙 및 후보군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매년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주주, 당사 경영진 및 지원부서, 사외이사, 지역 내 명망 있는 인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당사는 기존 관리중인 사외이사 후보군 20명에 신규 후보군 5명을 추가하여 총 25명을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선정하고 2016년도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부의하여 참석위원 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사회 후보군은 출신분야별로 금융 5명, 경제 6명, 경영 4명, 법률 2명, 회계/재무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을 통해 기존 후보군을 21명으로 조정하였고, 신규 후보군 22명을 새롭게 마련하여 총 43명을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으며,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부의하여 참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후보군은 출신분야별로 금융 12명, 경제 8명, 경영 5명, 법률 10명, 회계/재무 8명 등 총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③ 후보군 현황

1차 결의(심의)일자: 2016년 2월 3일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5	20%	
경제	6	24%	
경영	4	16%	
법률	2	8%	
회계/재무	8	32%	
합계	25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1	4%	
외부자문기관	—	—	
사외이사	5	20%	
지원부서	17	68%	
경영진	2	8%	
합계	25	100%	

2차 결의(심의)일자: 2016년 12월 16일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12	27.9%	
경제	8	18.6%	
경영	5	11.6%	
법률	10	23.3%	
회계/재무	8	18.6%	
합계	43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	—	
외부자문기관	—	—	
사외이사	6	14%	
지원부서	37	86%	
경영진	—	—	
합계	43	100%	

(자)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2016년도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16.2.3),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16.12.16)에서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해당 결의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2월 3일, 12월 16일 각각 보고하고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정하였습니다. (후보군 추천내역은 상기 (아)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③ 후보군 현황 참조)

(차)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① 사외이사 지원부서 설치현황

- 부서명 : 전략기획부
- 지원부서 인원구성 : 부장 1명, 부원 3명

②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업무 보고 및 지원내용

일자	위원회명	보고 및 지원내용
2016.2.3	이사회	2015년도 사외이사 평가 진행
2016.2.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군 현황 및 신규후보 탐색 지원
2016.2.17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자격검증 자료 제공
2016.3.3		최종후보자 자격검증 결과 보고, 일정 현황 보고
2016.12.16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신규 후보군 발굴 및 보고

(3) 감사위원 후보

당사의 감사위원은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4명 전원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후보자 인적사항, 후보자 추천사유 및 자격충족 여부는 본 연차보고서 3.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 사항 > (2)사외이사 후보(p49~73)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정 민 주

② 출생연도 : 1955년

③ 출신학교 : 경기고 - 서강대 경제학과 - 영국 Essex대 경제학 석사

④ 경력

2014. 08 BNK금융지주 부사장(現)
2010. 03 부산은행 상임감사위원
2008. 07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2006. 05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장
2005. 01 금융감독원 조사연구실장
2002. 02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부국장
1978. 01 한국은행 입행

(나) 후보 제안자

정민주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당사의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는 2010년 부산은행의 상임감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2014년 3월부터 BNK금융지주의 사내이사인 부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현재 당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영지원본부를

통할하며, 자회사 비상임이사로서 경영관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임 이후 안정적인 경영 지원 및 그룹 기업문화 확대, 그룹 신 CI개발 관련 홍보 강화,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 청약의 성공적 완수, 그룹 시너지 창출 확대 등 BNK금융그룹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BNK금융지주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 및 통찰력, 리더십, 역량을 높게 평가하여 연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후보자 역량 및 법률적 자격 요건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지주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정민주 후보는 당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및 자격 검증 등 실시 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소극적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없음
2. 적극적 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1조	충족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충족	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정민주 후보자의 사내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6년 3월 3일 제4차 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증 정밀 실시

를 통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당사에서 정하는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후보자의 금융업에 대한 지식과 위기대응 능력, 후보자의 경영 성과, 자회사 비상임이사로서의 수행 등 종합적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민주 후보자를 사내이사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바. 사외이사 평가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4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2016년 제1차 이사회 : 2016. 2. 3.(수) 11:30 -12:1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성호	김우석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박홍대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경영진 임면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2015년도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거래내역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2015년도 사외이사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준법감시인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제5기(2015년도) 결산 결과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부산은행 및 경남은행 출자(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 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당사와 BNK캐피탈간 포괄거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2차 이사회 : 2016. 3. 3.(목) 12:10 -13: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성호	김우석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박홍대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 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제2차 유상증자 및 자 회사 출자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리스크관리위원회 결 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2015년도 지주 경영 진 단기성과 평가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지주 장기성과 현금보 상 성과평가 확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지주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지주 장기성과 현금보 상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경남은행 주식매매 관 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상임이사 후보 확정 (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사.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확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아.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정관 일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사외이사운영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카.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 사항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이외의 후보 확정에 대한 찬성 표시(본임 선임에 대한 의결권 제한)

2016년 제3차 이사회 : 2016. 3. 25.(금) 11:20 -13:2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이사회내 위원회별 위원장 선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이사회 운영 및 사외 이사 활동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사외이사 기부금 지원 내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대표이사 회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이사회 의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선임사외이사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이사회내 위원회별 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4차 이사회 : 2016. 5. 4.(수) 11:00 -11:5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6년도 1/4분기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그룹 고객정보 관리업 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리스크관리위원회 결 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2016년도 자회사별 경영진 성과평가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경영진 장기성과 평가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2016년도 경영진 단 기성과 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경영진 장기성과 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5차 이사회 : 2016. 7. 28.(목) 11:30 -12:1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 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16년 상반기 가결 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그룹 고객정보관리업 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BNK투자증권 출자 (안)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거래 승인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6차 이사회 : 2016. 10. 7.(금) 10:00 -10:2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부산은행과의 임대차 계약 갱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7차 이사회 : 2016. 10. 28.(금) 11:20 -12: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6년 3/4분기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BNK투자증권 출자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그룹 고객정보관리업 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리스크관리위원회 결 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 지배구조법 관련 중요 내규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중요 내규 관련 세부 기준 등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8차 이사회 : 2016. 12. 16.(금) 11:20 -12: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16년 회사채 발행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2017년도 감사 업무 계획 수립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리스크관리위원회 결 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2017년도 경영 계획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2017년 회사채 발행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2017년 지주-자회사 간 포괄거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9차 이사회 : 2016. 12. 28.(수) 10:40 -11: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6.10.28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개정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명칭 변경(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위원회 통합(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2016년 제1차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6. 1. 29.(금) 10:40 -11: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성호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BNK투자증권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BNK캐피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 추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BNK캐피탈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BNK저축은행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BNK신용정보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BNK시스템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2차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6. 2. 3.(수) 12:10 -12: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성호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경남은행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추진(안)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가결

2016년 제3차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6. 2. 17.(수) 12:30 -13: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성호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경남은행 은행장 후보 추천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나.경남은행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4차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6. 3. 3.(목) 11:50 -12:1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성호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지주 상임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5차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6. 7. 28.(목) 11:20 -11: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창수	문일재	김찬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위원장 변경(안)	찬성	불참	의결권 제한 ^(주)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선임건으로 의결권 제한

2016년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6. 12. 16.(금) 11:10 -11:2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창수	문일재	김찬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감사위원회

2016년 제1차 감사위원회 : 2016. 2. 3.(수) 10:30 -10:5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성호	김우석	문재우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찬성	찬성	불참	찬성	가결
나.준법감시인으로부터 보고사항 검토	찬성	찬성	불참	찬성	가결

2016년 제2차 감사위원회 : 2016. 3. 3.(수) 09:40 -10:1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성호	김우석	문재우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감사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3차 감사위원회 : 2016. 3. 25.(금) 12:10 -12:2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⁴⁹⁾	가결

(주)본인 선임건으로 의결권 제한

2016년 제4차 감사위원회 : 2016. 10. 28.(금) 10:40 -10:55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자체 검사 실적 및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결의안건 없음				

2016년 제5차 감사위원회 : 2016. 12. 16.(금) 10:40 -10:55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6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2017년도 감사 업무계획 수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6차 감사위원회 : 2016. 12. 28.(금) 10:30 -10:4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리스크관리위원회

2016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6. 2. 3.(수) 10:50 -11:1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성호	김우석	김창수	박홍대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특의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전	결의안전 없음					

2016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6. 3. 3.(목) 10:10 -10: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성호	김우석	김창수	박홍대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 의결안전						
가.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관련 공 시정책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6. 3. 25.(금) 11:40 -11:5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 의결안건						
가.위원장 선임	의결권 제한 ^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선임건으로 의결권 제한

2016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6. 5. 4.(수) 10:00 -10: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리스크관리 현황보고	특의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자본적정성 관련 공시범위 추가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6. 7. 28.(목) 11:00 -11:2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리스크관리 현황보고	특의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결의안건 없음					

2016년 제6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6. 10. 28.(금) 10:55 -11:1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특의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리스크관리 제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6. 12. 16.(금) 10:55 -11:1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	특의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2017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그룹 내부등급법 신용리스크 통제조직 운영(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보수위원회

○ 2016.10.28 보수위원회 규정개정

- 보수위원회 명칭 변경 (경영발전보상위원회 → 보수위원회)

2016년 제1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 : 2016. 3. 3.(목) 11:20 - 11:5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성호	김우석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박홍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5년도 지주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지주 장기성과 현금보상 성과평가 확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지주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지주 장기성과 현금보상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2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 : 2016. 3. 25.(금) 11:50 - 12: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봉철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위원장 선임	찬성	의결권 제한 ^(주)	찬성	찬성	가결

(주) 본인 선임건으로 의결권 제한

2016년 제3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 : 2016. 5. 4.(수) 10:30 -11: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봉철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2016년도 자회사별 경영진 성과평가 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경영진 장기성과 평가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2016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경영진 장기성과 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4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 : 2016. 10. 28.(금) 11:10 -11:2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봉철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경영진 성과평가 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이사회운영위원회

2016년 제1차 이사회운영위원회 : 2016. 3. 25.(금) 12:40 -13: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창수	문일재	김찬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㉞	가결
나.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선임건으로 의결권 제한

(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16.10.28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

2016년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16. 2. 3.(수) 11:10 -11: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우석	문재우	박홍대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예비 후보군 선정(안)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16. 2. 17.(수) 11:40 -12: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우석	문재우	박홍대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사외이사 예비후보군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3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16. 3. 3.(목) 10:30 -11: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우석	문재우	박홍대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 제4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16. 3. 25.(금) 12:00 -12:1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위원장 선임	의결권 제한 ^(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선임건으로 의결권 제한

(아)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16.10.28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

2016년 제1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16. 2. 3.(수) 12:30 -13: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성호	김우석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박홍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불참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BNK금융지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추진(안)	불참 [㉠]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주)후보군 본인 포함으로 의결권 제한 및 회의 미참가

2016년 제2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16. 2. 17.(수) 12:00 -12: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성호	김우석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박홍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후보 추천	불참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후보군 본인 포함으로 의결권 제한 및 회의 미참가

2016년 제3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16. 3. 25.(금) 12:30 -12:4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이봉철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㉞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선임건으로 의결권 제한

(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6.10.28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

2016년 제1차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6. 3. 3.(목) 11:00 -11:2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성호	김우석	문재우	김창수	박홍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감사위원회위원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㉞	찬성	가결

(주)본인 외 후보추천에 대한 찬성 표시(본인 재선임 건에 대한 의결권 제한)

2016년 제2차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6. 3. 25.(금) 12:20 -12: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㉞)	찬성	가결

(주)본인 선임건으로 의결권 제한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김창수 활동내역

김창수 사외이사는 2016년 중 개최된 이사회 9회 중 9회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사회운영위원회 1회, 리스크관리위원회 7회, 보수위원회 1회, 감사위원회 6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3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6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모두에 참석하였습니다.

연중 개최된 이사회에서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되는 감사보고서 내 영문보고서는 세심한 검토를 거친 후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 제안하였으며, 보수위원회에서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 하락이 경영진 성과평가 지표 하락을 초래하여 세부적인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상에 후보자의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재점검 하였으며,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 점검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김창수는 당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6년 중 총 240시간(이사회 등 안전 사전설명,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의안 및 의사록 검토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문일재 활동내역

문일재 사외이사는 2016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16년 중 개최된 이사회 7회 중 7회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사회운영위원회 1회, 리스크관리위원회 5회, 보수위원회 3회, 감사위원회 4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1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모두에 참석하였습니다.

연중 개최된 이사회에서 투자증권 출자와 관련하여 NCR지표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룹사간 협업에 의한 시너지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분기별 결산과 관련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시장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실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판관비를 비롯한 비용절감과 조선, 해운업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경제의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문일재는 당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6년 중 총 160시간(이사회 등 안전 사전설명,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의안 및 의사록 검토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차용규 활동내역

차용규 사외이사는 2016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16년 중 개최된 이사회 7회 중 7회 모두 참석하였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5회, 보수위원회 3회, 감사위원회 4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모두에 참석하였습니다.

연중 개최된 이사회에서 지역경기의 악화 등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보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여 사전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연체비율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관리를 충실히 하여 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및 경남은행의 수도권 진출 현황과 관련하여 소매금융 위주의 소규모 점포 확대에 대한 현황 및 실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차용규는 당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6년 중 총 145시간(이사회 등 안전 사전설명,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의안 및 의사록 검토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라) 사외이사 김찬홍 활동내역

김찬홍 사외이사는 2016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16년 중 개최된 이사회 7회 중 7회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사회운영위원회 1회, 리스크관리위원회 5회, 보수위원회 3회, 감사위원회 4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1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모두에 참석하였습니다.

연중 개최된 이사회에서 IFRS9 도입은 금융기관에게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도입과 관련하여 지원조직, 전문인력, TFT 설치현황 등 프로젝트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차질 없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당부하였으며, 그룹 계열사 내 존재하는 비지배지분 현황 및 신종자본증권 확충 계획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경영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시점인 점을 감안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비용절감, 시너지강화, 리스크관리 강화등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김찬홍은 당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6년 중 총 155시간(이사회 등 안전 사전설명,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의안 및 의사록 검토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마) 요약

구분 성명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 시간
			이사회 운영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 위원회		회장후보 추천 위원회		임원후보 추천 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감사위원 후보추천 위원회		
사외 이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계
김창수	9	9	1	1	7	7	1	1	6	6	3	3	6	6	4	4	2	2	240
문일재	7	7	1	1	5	5	3	3	4	4	1	1	2	2	1	1	1	1	160
차용규	7	7	-	-	5	5	3	3	4	4	1	1	-	-	1	1	1	1	145
김찬홍	7	7	1	1	5	5	3	3	4	4	1	1	2	2	-	-	1	1	155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임원책임배상에 대비하여 임원책임보상보험을 그룹 차원에서 일괄 부보하고 있으며, 임원의 책임으로 인하여 회사 및 제 3자에게 법률상 책임을 부담케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상범위는 임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입니다. 방어비용이란 보험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의 조사, 합의 또는 소송시 소요된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을 포함한 제비용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조건은 보상하는 손해로 사외이사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을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사로서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혜택을 사실상 취한 행위, 이사가 저지른 사실상의 부정행위나 범죄행위,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사전승인 없이 지불한 이사의 급료, 공표되지 않는 회사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사실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제기되었던 소송 또는 그 소송에서 주장된 사실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서 행한 행위 또는 그 회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로 제기된 배상청구의 경우입니다.

당사는 매년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직 시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사외이사 자기부담액을 배상 책임액의 20% 이상으로 하며 자기부담액의 최대한도는 1억원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임원책임보상보험의 총한도보상액은 100억원이며 1 청구당 보상한도액도 100억원입니다.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 성명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비고
1.교육·연수 실시 내역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2016.1.29(금) (12:00~13:00) ○ 내용 : 경쟁력 우위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미대상	미대상	미대상	1시간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2016.3.18(금) (14:00~16:00) ○ 내용 : 2015년 BNK금융그룹 현황 설명 및 이사회 안내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시간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2016.5.13(금) (17:00~20:00) ○ 내용 : 2016년 그룹 운영 방향 및 주요 현안 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시간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2016.7.28(목) (14:00~16:00) ○ 내용 : 2016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시간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2016.10.28(금) (14:00~16:00) ○ 내용 : 1.동남권 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2.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및 이사회 운영방안 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시간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2016.12.16(금) (14:00 ~ 16:00) ○ 내용 : 1.2017년 경제 및 은행산업 전망 2.동남권 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시간
2. 2016년 교육 시간	12시간	11시간	11시간	11시간	-
3. 누적 교육 시간(선임 이후)	23시간	11시간	11시간	11시간	-

*누적 교육 시간 : 사외이사로 최초 취임 후 참석한 교육·연수 시간 합산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김창수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창수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선임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 운영규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김창수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전문성

김창수 사외이사는 무역 및 경제 관련 전공자로서 금융 및 경제 전반에 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자문위원,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제·금융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②직무공정성

김창수 사외이사가 최근 2년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부산대학교의 경우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가 없고,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윤리성, 책임성

김창수 사외이사는 지역 국립대학교에서 교수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 신망과 우수한 평판을 얻어왔고, 현재 감사위원으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경영진에 개진하고 있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④충실성

김창수 사외이사는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등 100% 출석하였으며,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제·금융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2) 사외이사 문일재

(가) 소극적 자격요건

문일재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선임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 운영규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문일재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전문성

문일재 사외이사는 재정경제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 비서관, 조달청 차장 등 공직에서 약 30년간 경제정책기획 업무를 담당하여 경제 관련 폭넓은 식견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경제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②직무공정성

문일재 사외이사는 기존 소속된 법인 및 현재 근무중인 대한석유협회와 당사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 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윤리성, 책임성

문일재 사외이사는 오랜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인품과 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사회적 신망을 갖춘 자이며, 현재 감사위원으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④충실성

문일재 사외이사는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등 100% 출석하였으며, 안전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해당사항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해당사항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제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3) 사외이사 차용규

(가) 소극적 자격요건

차용규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선임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 37) 및 사외이사 운영규정(§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차용규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전문성

차용규 사외이사는 (주)한창에서 10년 이상 경리부장 및 임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회계·재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ubc 울산방송(주) 대표이사, OBS 경인TV(주)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경험과 사회적 명성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 회계 및 재무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②직무공정성

차용규 사외이사는 현재 별도 소속된 법인 없이 당사의 사외이사직만 수행하고 있어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로서 객관적으로 안전을 검토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윤리성, 책임성

차용규 사외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활동 경험과 상장법인의 재무 및 감사 경력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명성과 높은 인품을 갖춘 자이며, 현재 감사위원으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④충실성

차용규 사외이사는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등 100% 출석하였으며, 안전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회계·재무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4) 사외이사 김찬홍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찬홍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선임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 운영규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김찬홍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전문성

김찬홍 사외이사는 미 워싱턴대 MBA(회계학전공), 서울대 경영학(회계학) 박사를 거쳐 국립세무대학교 교수(회계학),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을 거쳐 현재 명지대학교 회계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회계/재무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②직무공정성

김찬홍 사외이사가 소속된 명지대학교는 현재 당사와 거래관계가 없어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윤리성, 책임성

김찬홍 사외이사는 대학교 및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오랜 연구 및 교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신망과 우수한 평판을 얻어왔고, 현재 감사위원으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경영진에 개진하고 있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④충실성

김찬홍 사외이사는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등 100% 출석하였으며, 안전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회계·재무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기준일 : 2016.12.31)

사외이사	기부받은 비영리법인등		기부한 금융회사등	지원 내역	
	법인등의 명칭	사외이사와 관계		선임전	선임후
김창수		()	()	해당사항 없음	
문일재		()	()	해당사항 없음	
차용규		()	()	해당사항 없음	
김찬홍		()	()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개요

당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최초 선임시 2년 이내이며, 연임시 1년 이내로 제한하되, 내·외부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량·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초 이사회를 통한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 필요시 2년마다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①평가주체 :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초에 이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평가기준

평가방법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되며 정성평가는 자기평가(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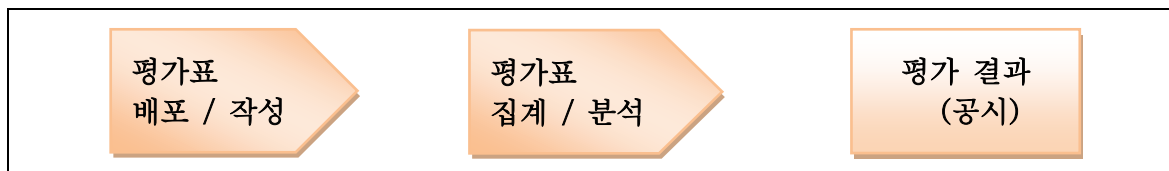
이사회평가(50%), 직원평가(20%)로 평가하고 정량평가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률(10%)을 반영합니다.

평가항목은 이사의 역량 및 전문성,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회사 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기준 요약〉

구 분	정성평가(다면평가)			정량평가
평가종류	자기평가	이사회평가	직원평가	
평가자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본인	본인 제외한 이사전원	이사회 지원업무 담당 본부장 및 부서장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평가항목	○ 사외이사 평가표 주요 항목 — 역량 및 전문성 — 이사회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 — 회사발전 기여도			
평가비중	20%	50%	20%	10%

③평가절차 : 이사 및 직원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④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방법을 자기평가, 이사회평가, 직원평가 등으로 다면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본인평가를 병행하되, 타인평가비중을 높여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운영규정 제17조에 의거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의 평가를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①총론

2016년도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 전원 탁월(S등급)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의 참석률이 100% 수준으로 매우 양호하고 이사회(위원회 포함)시 안전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의견제시 및 당사 경영진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으로 이사회의 역할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②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선방안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기타	
김창수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
문일재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
차용규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
김찬홍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

(3) 외부평가

당사의 사외이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평가, 이사회 평가, 직원평가 등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별도의 외부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사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사외이사의 역할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사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를 장을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회장이 이사회장으로 선임되어 있는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선임사외이사는 김창수 이사이며, 그 역할은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보고 및 관련자료를 이사회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 선임사외이사는 3월 제1차 보수위원회 종료 후 선임 사외이사를 위한 경영진 성과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당일 이사회 종료 후 전략기획부장이 전체적인 보수체계에 대해 선임 사외이사에게 추가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출함)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016. 7월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 직후 리스크관련 용어 및 내용 이해의 용이성을 위해 사외이사 교육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위원회 종료 후 리스크관리부장은 위 요구사항에 따라 총 4회차에 걸쳐 리스크관리 개요 및 관리체계, 리스크 유형별 관리 현황, 리스크한도 및 익스포저 관리등에 관하여 작성 후 위원 전원에게 E-MAIL의 방식으로 보고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당사의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전략기획부이며 선임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지원,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등의 보고 및 발송,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략기획부 내 사외이사 지원을 위한 인력은 2016년말 현재 4명입니다.

2016년도 중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업무수행으로 이사회와 관련하여 선임사

외이사 및 사외이사의 요청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서면 및 E-MAIL을 통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외이사 워크샵 관련 업무지원과 사외이사 및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관련하여 후보군 물색, 후보자 자격요건 심사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 교육 및 연수를 위해 그룹 현황 등 자료 작성 및 당사 연구소 발간 정기간행물 등을 발송 하였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 실시를 위해 사외이사에게 평가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에 대하여 임원보수규정 및 사외이사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보수 및 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 등 기타 편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별 재직기간 및 보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외이사 김창수

(가) 재직기간 : 2014.3.28 ~ 현재

(나) 보수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2,550만원	
	기본급	2,000만원	기본급 40%
	상여금	—	
	기타수당	550만원	회의참가수당 (50만원 X 11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	

(주)부산은행과 겸직으로 기본급은 사외이사 보수의 40%지급(임원보수규정 § 4)

(2) 사외이사 문일재

(가) 재직기간 : 2016.3.25 ~ 현재

(나) 보수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200만원	
	기본급	3,850만원	2016.3.25 선임
	상여금	—	
	기타수당	350만원	회의참가수당 (50만원 X 7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	

(3) 사외이사 차용규

(가) 재직기간 : 2016.3.25 ~ 현재

(나) 보수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200만원	
	기본급	3,850만원	2016.3.25 선임
	상여금	—	
	기타수당	350만원	회의참가수당 (50만원 X 7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항목		금액	산출내역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	

(4) 사외이사 김찬홍

(가) 재직기간 : 2016.3.25 ~ 현재

(나) 보수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200만원	
	기본급	3,850만원	2016.3.25 선임
	상여금	—	
	기타수당	350만원	회의참가수당 (50만원 X 7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사외이사 등(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 체결 내역 : 해당사항없음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김성호 (前)	'11.3.15	'16.3.26	60 개월	운영위('11.3.월~'16.3.월) 감추위('11.3.월~'16.3.월) 감사위('11.3.월~'16.3.월) 보상위('12.3.월~'13.3.월) ('14.3.월~'16.3.월) 사추위('13.3.월~'14.3.월) 리스크위('13.3.월~'16.3.월) 회추위('14.3.월~'16.3.월)	운영위원장('11.3.월~'12.3.월) ('13.3.월~'14.3.월) ('15.3.월~'16.3.월) 감추위위원장('12.3.월~'13.3.월) 리스크위원장('13.3.월~'15.3.월) 회추위위원장('15.3.월~'16.3.월) 선임사외이사('13.3.월~'16.3.월)	(재) 행복세상 이사장(現) 법무부 장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우석 (前)	'11.3.15	'16.3.26	60 개월	운영위('11.3.월~'16.3.월) 리스크위('11.3.월~'16.3.월) 보상위('11.3.월~'16.3.월) 감추위('11.3.월~'16.3.월) 사추위('12.3.월~'13.3.월) ('14.3.월~'16.3.월) 감사위('11.3.월~'16.3.월) 회추위('15.3.월~'16.3.월)	운영위원장('13.3.월~'14.3.월) ('15.3.월~'16.3.월) 리스크위원장('15.3.월~'16.3.월) 감사위원장('11.3.월~'15.2.월) 선임사외이사('11.3.월~'12.3.월)	예일회계법인 회장(現)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중수 (前)	'11.3.15	'15.3.27	48 개월	리스크위('11.3.월~'13.3.월) ('14.3.월~'15.3.월) 보상위('11.3.월~'15.3.월) 사추위('11.3.월~'14.3.월) 감추위('11.3.월~'15.3.월) 운영위('13.3.월~'15.3.월)	보상위원장('13.3.월~'15.3.월) 사추위위원장('11.3.월~'15.3.월)	한성대 명예교수 (사)한국행정학회 회장 한성대 대학원장
김중화 (前)	'11.3.15	'13.3.28	24 개월	리스크위('11.3.월~'13.3.월) 보상위('11.3.월~'13.3.월) 사추위('11.3.월~'13.3.월) 감추위('11.3.월~'13.3.월) 감사위('11.3.월~'13.3.월)	감추위위원장('11.3.월~'12.3.월) 선임사외이사('12.3.월~'13.4.월)	덕성여대 명예교수 덕성여대 총장 국무총리 무역 및 산업정책 담당관
오거돈 (前)	'12.3.27	'14.3.5	24 개월	운영위('12.3.월~'13.3.월) 감추위('12.3.월~'14.3.월) 감사위('12.3.월~'14.3.월) 리스크위('13.3.월~'14.3.월) 보상위('13.3.월~'14.3.월)	운영위원장('12.3.월~'13.4.월) 감추위위원장('12.3.월~'13.4.월)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시 행정부시장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박맹언 (前)	'13.3.28	'14.3.4	12개월	보상위('13.3월~'14.3월) 리스크위('13.3월~'14.3월) 감추위('13.3월~'14.3월) 사추위('13.3월~'14.3월) 감사위('13.3월~'14.3월) 회추위('13.3월~'14.3월)	사추위위원장('13.3월~'14.3월)	부경대학교 교수(現) (사)한국해양산업협회 공동 이사장 부경대학교 총장
문재우 (前)	'14.3.28	'16.3.27	24개월	운영위('15.3월~'16.3월) 보상위('14.3월~'16.3월) 리스크위('14.3월~'15.3월) 사추위('14.3월~'16.3월) 감추위('14.3월~'16.3월) 감사위('14.3월~'16.3월) 회추위('15.3월~'16.3월) 임추위('15.3월~'16.3월)	사추위위원장('14.3월~'15.3월) 감사위원장('15.3월~'16.3월)	법무법인 윤촌 고문 (現) 손해보험협회 회장 금융감독원 감사
김창수 (現)	'14.3.28	'17.3.24	33개월	보상위('14.3월~'16.3월) 사추위('14.3월~'15.3월) ('16.3월~ 현재) 감추위('14.3월~'16.10월) 감사위('14.3월~ 현재) 회추위('15.3월~'16.10월) 리스크위('15.3월~ 현재) 운영위('16.3월~ 현재) 임추위('14.3월~현재)	보상위원장('15.3월~'16.3월) 사추위위원장('16.3월~'16.10월) 감추위위원장('14.3월~'15.3월) 리스크위원장('16.3월~ 현재) 임추위위원장('16.7월~ 현재) 선임사외이사('16.3.월~ 현재)	부산대 무역학부 교수(現) 부산은행 사외이사 (現) (사)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박흥대 (前)	'15.3.27	'16.3.25	12개월	보상위('15.3월~'16.3월) 사추위('15.3월~'16.3월) 리스크위('15.3월~'16.3월) 감추위('15.3월~'16.3월) 회추위('15.3월~'16.3월)	사추위위원장('15.3월~'16.3월)	법무법인 유석 대표 변호사 (現) 부산고등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문일재 (現)	'16.3.25	'18.3.24	9개월	운영위('16.3월~ 현재) 리스크위('16.3월~현재) 보수위('16.3월~ 현재) 사추위('16.3월~'16.10월) 임추위('16.3월~ 현재) 감사위('16.3월~ 현재) 감추위('16.3월~'16.10월) 회추위('16.3월~'16.10월)	보수위원장('16.3월~ 현재) 회추위위원장('16.3월~'16.10월)	대한석유협회 부회장(現) 조달청 차장 재정경제부 기획국장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차용규 (現)	'16.3.25	'18.3.24	9 개월	리스크위('16.3 월~현재) 보수위('16.3 월~ 현재) 사추위('16.3 월~'16.10 월) 감사위('16.3 월~ 현재) 감추위('16.3 월~'16.10 월) 회추위('16.3 월~'16.10 월)	감추위위원장('16.3 월~'16.10 월)	미디어 OBS 부회장 OBS 경인TV 대표이사 ubc 울산방송 대표이사
김찬홍 (現)	'16.3.25	'18.3.24	9 개월	운영위('16.3 월~ 현재) 리스크위('16.3 월~현재) 보수위('16.3 월~ 현재) 임추위('16.3 월~ 현재) 감사위('16.3 월~ 현재) 감추위('16.3 월~'16.10 월) 회추위('16.3 월~'16.10 월)	운영위원장('16.3 월~ 현재) 감사위원장('16.3 월~ 현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現)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세무대학 회계학 교수

※ 위 표에서 사용된 각종 위원회의 약칭의 정식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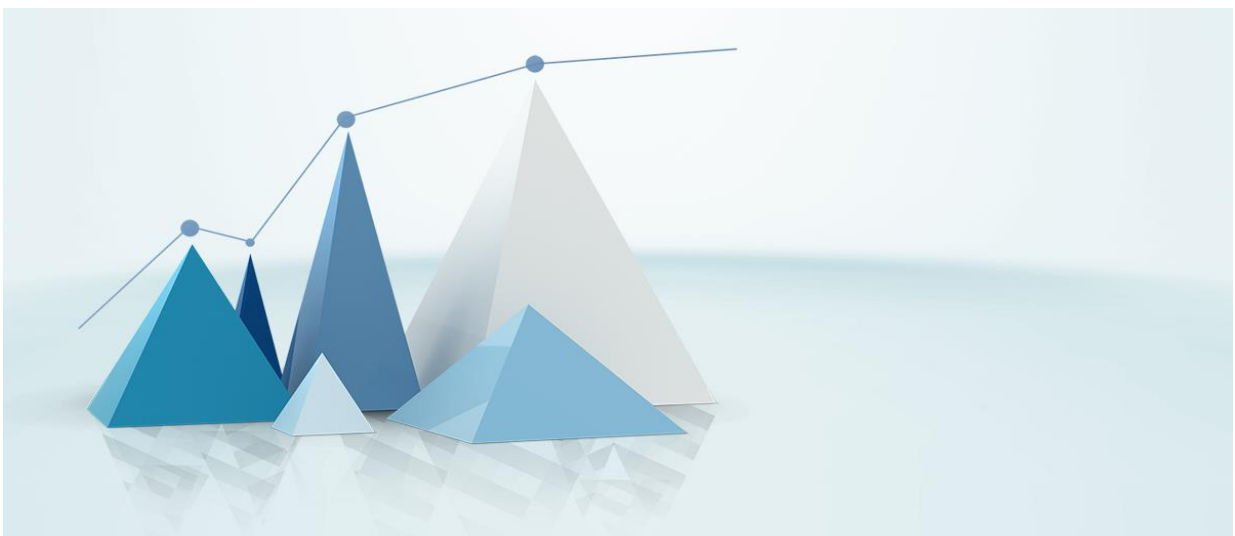
운영위 : 이사회운영위원회 / 리스크위 : 리스크관리위원회 / 보상위 : 경영발전보상위원회 / 보수위 : 보수위원회 / 임추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추위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감추위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 : 감사위원회 / 회추위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16.10.28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16.10.28 위원회 명칭 변경 : 경영발전보상위원회 → 보수위원회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예측 가능한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2월과 11월 개정하였으며,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6년 10월 제7차 이사회에서 일부 규정 개정과 함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절차 등의 체계적 구축 및 적정성 점검을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의 주요 내용은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입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은 이사회가 매년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세부 내용 및 승계 절차, 후보군 관리 현황 등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첨부 9.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참조]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가) 최고경영자 자격요건

당사는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따라 당사 및 계열사의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관련법령(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을 최소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당사는 원활한 최고경영자 승계를 통한 안정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지배구조법 내용을 반영하여 2016년 10월 28일 제7차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동 계획에 따른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서 정한 적정성 점검을 통해 그룹 내부 후보군을 선정하여 후보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경영관리 역량 강화, 대외교섭 능력 강화, 경영기법 습득으로 분류하여 교육 및 연수 등 이행 실적을 관리하고 이사회에 연 1회 이상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 및 후보군 관리내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한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자문 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 경영승계절차 개시사유 및 시기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는 최고경영자의 임기 도래로 인한 퇴임, 임기 중 유고 발생에 따른 사임, 해임, 기타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승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시시기는 당사 및 계열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신속히 정하고, 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 최종후보자 추천절차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기존 보유한 후보군에 대하여 승계절차 개시 시점에서 소극적 자격요건을 재검증하여 후보군을 선정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요구되는 그룹 경영가치 및 역량 보유, 업무전문성 및 경험, 공익성 및 건전 경영, 리더십, 경영성과, 대외인지도, 세평, 경영전략 등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보유 수준을 심의·평가하고, 심층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최종 후보자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임원후보추천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마) 경영승계 절차 종료

최고경영자 승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사회는 최대한 빠른시간 이내에 최고경영자 후보를 심의·확정하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 후보인 이사로 선임되며, 주주총회 이후 최초로 열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2) 비상계획

당사는 최고경영자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임기 중 유고 발생 시, 비상승계계획 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서 정한 직무대행자가 임시 CEO로서의 권한대행을 맡아 신속히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임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내이사, 업무집행책임자, 이사회가 정하는 자의 순으로 정하게 됩니다.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되, 상법 제408조에서 규정한 회사의 상무(常務)에 한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 그룹과 추천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 심사 및 검증 등을 통하여, 사유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선임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 회사 운영계획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①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②평가 :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은 지배구조법 등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①자격요건 :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2조,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제4조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자
-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②평가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경영승계절차 개시에 따라 성세환 現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하였으며,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의 종합적 검토와 법령 및 내·외규상의 징계 여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2016년 2월 17일 최고경영자 후보로 결정, 이사회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자 평가 내용]

-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검증
- 역량강화 활동(교육 및 연수 등) : 경영관리 역량강화, 대외교섭능력 강화, 경영기법 강화
- 기본적 자질 보유 : 리더십(지도력, 통솔력), 전문성(전문가적 기본 자질), 세평(신뢰경영, 책임경영), 대외인지도(도덕성, 청렴성, 인품)
- 최근 3개년 그룹 경영성과(경영실적 및 주요 추진 사업) 평가 : 탁월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 선정을 위하여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2016.10.28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을 위하여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의 추천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매년 점검하여 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성세환 회장의 임기가 2016년 8월 13일까지이나, 상장회사로서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따른 부담을 제거하고 지주 및 부산은행 CEO의 임기를 정기주주총회일로 통일시킴으로써 지배구조 관련 일정을 체계화하며, 지배구조의 불확실성 조기 해소 및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통한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를 2016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하는 중도사임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제7조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 기준(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의거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016년 2월 3일 제1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 기준에서 정한 상시 후보군 3명을 1차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으며, 후보 추천 일정 및 후보 추천 세부 절차(면접 실시 및 자격요건 검증 검토, 내·외부 후보군 검토 등)를 논의하고 최종후보군을 단독 후보로 압축하는 등의 내용을 심의·결의 하였습니다.

2016년 2월 17일 제2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의 종합적 검토와 법령 및 내외규상의 자격 요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성세환 現 회장을 최종 후보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3월 3일 제2차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최고경영자 후보로 최종 추천되었으며, 2016년 3월 25일 개최된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었으며, 같은 날 제3차 이사회에서 성세환 이사가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일자	운영현황	비고
2016.2.3	경영승계 절차 개시	제1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세부 추진 방안 논의 및 후보군 압축	
2016.2.17	최종 후보자 결정	제2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16.3.3	이사 후보 선임안건 주주총회 부의	제2차 이사회
2016.3.25	이사 선임	제5기 정기주주총회
2016.3.25	대표이사 회장 선임	제3차 이사회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당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총괄하여 운영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후보군 선발 및 구성,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 후보군 압축, 예비후보자 및 최종후보자 선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당사는 2016년말 현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하여 총 4명의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후보군 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는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지원은 이사회 지원부서인 전략기획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육성 후보군별 경영성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및 점검,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2016년 10월 28일 이사회에서 기존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 기준」을 폐지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경영승계 계획에서 정한 내부 육성 후보군은 총 4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당사는 2016년 10월 제7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 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이사회에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전년도 CEO후보

군 관리 및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후보자 그룹 자격 검증 및 승계절차별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을 위하여,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제 10조에 따라 전략기획부를 전담지원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지원부서 역할은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부서명 : 전략기획부

○직원수 : 총 4명(부장 1명, 직원 3명)

○운영내역

일자	운영내역	비고
2016.2.3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 절차 수립 지원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업무 -후보 추천 추진 일정 및 세부절차 보고	제1차 회장후보 추천위원회
2016.2.17	최종 후보자 추천 -최종 후보자 자격검증 실시내역 보고 -후보자 경영성과 내역 보고	제2차 회장후보 추천위원회
2016.10.28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수립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 및 관리업무 -후보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제7차 이사회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나. 구성(감사위원회 위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라. 감사보조조직 등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과 내부통제시스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및 평가를 통하여 BNK금융그룹의 건전 경영 및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정관 §52, 감사위원회규정 §3)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수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제·금융 전문가, 경영전문가,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등 안전에 대한 감독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안전에 대한 감독업무를 감사위원장에게 위임하여 감사위원장의 사전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전 일체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쳤으며, 심의결과 “적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 37, 지배구조법 § 20 ④)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 402).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16년도 2차 감사위원회(3월3일 개최), 제5차 감사위원회(12월16일 개최)에서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 결과 및 2016년도 회계감사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외부감사인(안진회계법인)의 주요 보고 내용은 중간감사 및 기말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무제표 부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하여 미반영된 중요한 왜곡표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 설계 및 운영이 중대한 취약점 및 유의적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감사위원회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외감법 § 4)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14. 3. 28 지주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제안요청서 검토부터 각 제안사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해 일상감사 등을 통해 경영진과 협의하였으며, 그간의 외부감사업무 실적 및 수행능력, 향후 원활한 업무수행 가능 여부,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선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임감사위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실질적인 감사기능이 작동하도록 다음의 감사업무를 감사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감사보조기구(검사부)를 통하여 감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업무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내부통제업무가 적정하게 실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 업무로는 ①금융회사가 정하는 감사위원회규정 등에 따른 일상감사 사항 ②감사계획 실시, 결과 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통할 ③검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④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사항 및 주요업무 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도 주요 검사결과 보고는 제4차 감사위원회에서 자체검사 실적 및 결과를 보고(2016년 9월말 기준) 하였으며, 제5차 감사위원회에서 2016년도 전체 검사결과 및 조치현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의 결산서류를 보고 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위원장은 주주총회에 감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 447조의3~4)

결산서류 및 영업보고서가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계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산서류와 외부감사인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세밀하게 점검한 결과, “적정” 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주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

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2016년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 보고 할 예정입니다.

(마) 기 타

감사위원회는 2017년도 1차 감사위원회(2월9일 개최)에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으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특히 2016년도 5차 감사위원회에서 2017년 감사업무 계획수립 사항을 결의하여 감사 기본방향을 “내부통제 적정성 확보를 통한 그룹의 미래성장 지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통한 리스크 잠재요인 제거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점검 강화를 통한 정도경영 실천지원 및 금융사고의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 위원은 관련 법률에 의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2016.10.28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말 현재 감사위원회는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3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4명 전원 임기 만료로 인해, 201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명은 연임되고, 새로이 3명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 중 김찬홍 사외이사, 차용규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지배구조법 시행령 § 16 ①)]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구성원

(2016년말 현재)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찬홍	사외	위원장	2016.03.25	2018.03.24
김창수	사외	위원	2016.03.25	2017.03.24
문일재	사외	위원	2016.03.25	2018.03.24
차용규	사외	위원	2016.03.25	2018.03.24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6년도 감사위원회는 총 6회가 소집되었으며 위원의 평균 참석율은 95.8%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17년 3월 소집된 2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관련하여 담당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감사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 설명토록 하였고 2016년 5차 및 2017년 2차 감사위원회에는 외부감사인을 참석토록 하여 감사계획 및 제6기 결산 감사 결과를 설명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6년도 제 1차 감사위원회 : 2016. 2. 3 (10:30 ~ 10:50)

[안전 통지일 : 2016. 1. 26]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김우석	김성호	문재우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 의결안건

가.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평가 ¹⁾	찬성	찬성	불참	찬성	가결
나.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보고사항 검토 ²⁾	찬성	찬성	불참	찬성	가결

1)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2015.11.23 ~ 11.27. 기간중 총 8개부문 75개 평가 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표에 의거 산정한 결과 종합평가등급은 2등급으로 지주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이 적정하고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2) 준법감시활동 결과 보고로 내부통제 컨트롤 기능 강화를 위해 그룹내부통제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그룹 계열사간 내규불일치 해소 및 업무 적정성 확보를 위해 내규정합성 점검 절차 마련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였음.

☞ 내부통제 활동 결과 (지주 및 자회사) : 위반사항없음.

(나) 2016년도 제 2차 감사위원회 : 2016. 3. 3 (09:40 ~ 10:10)

[안전 통지일 : 2016. 2. 26]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 고
1. 위원 성명	김우석	김성호	문재우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의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적정성 평가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내부감시장치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⁴⁾	찬성	찬성	참석	찬성	가결
마.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⁵⁾	찬성	찬성	참석	찬성	가결
바. 감사위원장 선임 ⁶⁾	찬성	찬성	참석	찬성	가결

1)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거 시스템으로 관리·운용되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여 세부업무를 수행하는 등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음.

2)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서 및 외부감사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감사계획수립, 감사방

법 및 감사결과 보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안전회계법인은 기말감사 등 회계감사와 감사계획결과 보고 등 7회 실시

3)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장치 및 그 기능, 구성 등 내부감시장치의 개요 및 운영에 대한 평가로 당사의 내부감시장치는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음.

4) 결산서류 및 영업보고서가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계법령 및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등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되었음.

5)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의 적법성 여부를 위해 제5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5개 의안과 기타보고(최대주주 등과의 거래현황)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6) 회의결과 경제·금융 전문가인 김창수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

(다) 2016년도 제 3차 감사위원회 : 2016. 3. 25 (12:10 ~ 12:20)

[안전 통지일 : 2016. 3. 25]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 고
1. 위원 성명	김찬홍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 의결안전					
가. 위원장 선임1)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가결

1) 회의결과 회계전문가이신 김찬홍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

(라) 2016년도 제 4차 감사위원회 : 2016. 10. 28 (10:40 ~ 10:55)

[안전 통지일 : 2016. 10. 21]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 고
1. 위원 성명	김찬홍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 자체 검사 실적 및 결과 보고 ¹⁾	특의의견 없음				

1) 2016.1.1 ~ 9.30 기간 실시한 자체검사 실적 및 결과 보고 (자회사 업무검사 6건, 테마점 검 1건, 일상감사 79건)

(마) 2016년도 제 5차 감사위원회 : 2016. 12. 16 (10:40 ~ 10:55)

[안전 통지일 : 2016. 12. 8]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 고
1. 위원 성명	김찬홍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 2016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계획 보고	특의의견 없음				접수
4. 의결안전					
가. 2017년도 감사업무 계획 수립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2017년 감사업무 기본 방향을 “내부통제 적정성 확보를 통한 그룹의 미래성장 지원”으로 정하고 중점추진사항(4가지) 중심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임.

(바) 2016년도 제 6차 감사위원회 : 2016. 12. 28 (10:30 ~ 10:40)

[안전 통지일 : 2016. 12. 21]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 고
1. 위원 성명	김찬홍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없음				
4. 의결안전					
가.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 임면 에 대한 동의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신임 감사부장 임면 동의

(3) 평가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에 전년도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전의 적정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 전원과 위원회 지원업무 담당본부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의 도출을 통해 감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 및 연간 계획 수립 시 활용됩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당사는 감사업무의 실질적인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보조기구로 독립조직인 감사부를 두고 있으며, 감사인원은 2017년 1월 말기준 총 4명(부장 1, 감사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감사부에서 수행한 주요 감사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지주사와 자회사의 경영 및 내부통제업무 등 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고 사전예방 및 건전경영 제고를 위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업무 수행실적〉

일 자	대 상	검 사 내 용
2016.12.05~12.09	全 지주부서	▪ 업무 검사 (지주부서 주요 추진 사업 등 업무 전반)
2016.11.23~11.29	全 지주부서	▪ 2016년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2016.04.18~04.22	BNK자산운용	▪ 업무 검사 (경영전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부문 등)
2016.05.23~05.27	BNK저축은행	▪ 업무 검사 (경영전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부문 등)
2016.06.27~07.01	BNK시스템	▪ 업무 검사 (경영전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부문 등)
2016.07.25~07.29	BNK신용정보	▪ 업무 검사 (경영전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부문 등)
2016.08.29~09.02	BNK투자증권	▪ 업무 검사 (경영전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부문 등)
2016.09.26~10.05	BNK캐피탈	▪ 업무 검사 (경영전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부문 등)
2016.02.05~02.12	(지주)재무기획부	▪ 부문 검사 (결산 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2016.05.02~05.13	全 지주부서	▪ 부문 검사 (업무용 PC 보안 관리 적정성)
2016.11.10	全 지주부서	▪ 부문 검사 (주요 자산 및 중요현물 점검)
2016.10.31~11.04	BNK캐피탈 (해외법인)	▪ 부문 검사 (주요자산 및 내부통제 이행실태 점검 등) >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3개 법인 대상
연 중	全 지주부서	▪ 일상 감사 (경영진의 일상업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연 중	全 지주부서	▪ 대외보고서 (금감원 업무보고서 등 작성의 적정성 검토)
연 중	자회사	▪ 감사 결과 (자회사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연 중	자회사	▪ 경영관리규정에 의한 보고사항 검토
연 중	지주회사 및 자회사	▪ 대외 감독기관 수검 및 자회사 감사결과 보고

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제경비 일체를 당사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회사 및 그룹자산이 날로 증가하고 업무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7. 리스크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7

리스크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 및 자회사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정책을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선호도 및 리스크관리한도를 설정하여 그 준수여부를 감시·감독하는 등 그룹 전반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경영진의 과도한 리스크부담을 견제하고 균형있는 경영의사결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 외에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외이사 4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부서는 사외이사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정기적인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6년도 사외이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교육실시 현황

1.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전반)('16.4.20)
2. 리스크관리 개요 및 관리체계('16.9.19)
3. 리스크 유형별 관리 현황('16.10.28)
4. 리스크한도 및 익스포저 관리('16.12.16)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내부규정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이사회규정」 제12조 ①항 4호에 의거 2011년 3월 15일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부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철학과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연말기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시 연중 수행한 중점추진과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2017년도 리스크관리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1. 그룹 리스크관리 철학(리스크관리규정 제4조)

☞ 위험과 수익간의 균형 유지를 통한 그룹의 지속성장 지원

2.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목표

☞ 통합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한 자본효율성 및 자산건전성 제고

3. 중점추진과제

① 그룹사간 리스크관리체제 및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② 그룹 내부등급법 도입을 통한 통합리스크관리체제 선진화

③ 그룹 여신포트폴리오에 대한 신용리스크관리 강화

④ 글로벌 금융규제 단계적 국내 도입에 사전대응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가용장부자본 중 최대손실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소요자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리스크선호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열사의 연간 업무계획 및 금융환경 악화 전망 등을 반영하여 2017년도 리스크선호도를 83%로 설정하고, 매분기별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를 통해 내부자본비율(총리스크량 ÷ 가용장부자본)이 리스크선호도 이내에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각종 투자 등의 수익창출 활동에서 수반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을 리스크량으로 계량화하여 그룹 및 계열사에 대한 리스크허용한도를 설정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허용한도는 그룹 리스크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은행계열사 및 비은행계열사별로 리스크유형별 한도산출방법을 정하고, 신용.시장.금리.운영리스크 및 자본버퍼(위기상황추가자본, 신용편중 및 전략.평판리스크)에 대한 내부자본 사용계획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 및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을 정하고 그룹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리스크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규정에서 정하는 리스크관리원칙 및 리스크관리방안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그룹 리스크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정의한 각종 리스크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리스크관리지침」으로 명문화하여 그룹 리스크관리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마) 기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결의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 또는 절차 등에 대해서 그룹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을 통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자회사등의 각종 리스크의 관리현황 및 리스크 허용한도의 관리현황
2. 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한 결의사항
3.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
4. 경영관리협의회에 제출한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사외이사와 리스크관리본부 및 업무지원본부를 통할하는 상임이사인 부사장 1명을 선임하였습니다. 전체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80%이며, 경제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구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3월 25일자 주주총회에서 기존 위원이었던 김우석, 김성호 및 박홍대 사외이사는 사임 및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신규위원으로 문일재, 차용규 및 김찬홍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위원장으로는 기존 김우석 사외이사에서 2016년 3월부터 김창수 사외이사가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2016년말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창수	사외	위원장	2015.03.27	2017.03.24
문일재	사외	위원	2016.03.27	2017.03.24
차용규	사외	위원	2016.03.27	2017.03.24
김찬홍	사외	위원	2016.03.27	2017.03.24
정민주	상임	위원	2014.03.28	2017.03.24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6년중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총 7회 개최되었습니다. 동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11건이었으며 결의안건은 6건, 심의·보고안건은 5건입니다.

6건의 결의안은 모두 가결처리되었으며, 매분기별 그룹 리스크한도관리 현황, 자본적정성 현황, 자산건전성 현황, 자회사 리스크관리회의체 결의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6년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6. 2. 3(10:50~11:10)

[안전 통지일 : 2016년 1월 26일(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우석	김성호	김창수	박홍대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¹⁾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 응답				

1) '15.12월말 기준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한도관리 현황,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현황, 2015년도 리스크관리 중점추진과제 이행현황 점검 등

(나) 제2016년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6. 3. 3(10:10~10:30)

[안전 통지일 : 2016년 2월 24일(수)]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우석	김성호	김창수	박홍대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관련 공시정책 승인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 제9조 신설에 따른 공시범위 및 공시관련 내부통제 등에 대한 승인

(다) 제2016년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6. 3. 25(11:40~11:50)

[안건 통지일 : 2016년 3월 17일(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위원장 선임(안) ¹⁾	의결권 없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호선으로 김창수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

(라) 제2016년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6. 5. 4(10:00~10:30)

[안건 통지일 : 2016년 4월 26일(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¹⁾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 응답					접수
4. 의결안건						
가. 자본적정성 관련 공시범위 추가 승인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16.3월말 기준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한도관리 현황, 자산건전성 현황 등 보고

2) 공시범위 중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

(마) 제2016년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6. 7.28(10:50~11:10)

[안건 통지일 : 2016년 7월 22일(금)]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¹⁾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 응답	접수

1) '16.6월말 기준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한도관리 현황, 자산건전성 현황 등 보고

(바) 제2016년도 제6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6. 10. 28(10:00~10:30)

[안전 통지일 : 2016년 10월 18일(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¹⁾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 응답					접수
4. 의결안건						
가.리스크관리 제규정 개정(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16.9월말 기준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한도관리 현황, 자산건전성 현황 등 보고

2)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리스크관리 규정 개정

(사) 제2016년도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6. 12. 16(10:55~11:10)

[안전 통지일 : 2016년 12월 7일(수)]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창수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 ¹⁾	위기발생 시에도 자본적정성 훼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접수
4. 의결안건						
가.2017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그룹 내부등급법 신용리스크 통제조직 운영(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감독원 점검기준에 따라 내부자본적정성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 후 감독원 제출
- 2) 2017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철학 및 전략목표 수립, 리스크선호도 설정(83.0%),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한도 설정
- 3) 감독원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조건 부합 및 내부등급법 승인 자회사 통제 등 그룹 통제 구조 확립

(3) 평가

당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에 전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전의 적정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 전원과 위원회 지원업무 담당본부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의 도출을 통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 및 연간 계획 수립 시 활용됩니다.

8. 이사회운영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나. 구성(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8

이사회운영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회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및 논의,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및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이사회와 경영진간의 상호 견제 하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조언, 이사회등의 개최 및 사외이사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 구성(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

(1) 총괄

당사의 이사회운영위원회는 그룹 지배구조 및 이사회 정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 위원장(이사회위원장, 감사위원회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 보수위원장) 4인으로 구성하며, 다만 위원장의 겸직으로 위원의 수가 4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만큼 다른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찬홍	사외	위원장	2016.03.25	2017.03.24
성세환	상임	위원	2016.03.25	2017.03.24
김창수	사외	위원	2016.03.25	2017.03.24
문일재	사외	위원	2016.03.25	2017.03.24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6년에는 총 1회의 이사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위원들의 참석률은 100%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이사회 운영 방안 및 사외이사 활동계획, 교육 및 연수, 평가계획, 위원장 선임 등을 심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16년 제1차 이사회운영위원회 : 2016. 3. 25.(금) 12:40 -13:00

[안건 통지일 : 2016년 3월 17일(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창수	문일재	김찬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주)}	가결
나.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선임건으로 의결권 제한

9. 그룹경영관리협의회

가. 역할

나. 협의절차(운영현황)

다. 구성

라. 활동내역 개요



9

그룹경영관리협의회

가. 역할

당사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그룹경영관리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동 협의회를 2015.2.4부터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연간 경영계획 수립,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해산·영업양도·분할·합병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자회사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 중 의장이 자회사간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 경영현안 등에 관하여 당사의 최고경영자(회장)의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협의절차(운영현황)

동 협의회는 의장인 당사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원칙적으로는 분기 1회 소집하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일시와 장소는 의장이 지정하며, 간사(전략기획부장)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사전에 각 위원 및 참석자에 통지합니다.

동 협의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 성격의 협의체이므로 심의·의결 기능은 없으나,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위원간 심도 깊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사항>

1.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연간 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해산·영업양도·분할·합병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규의 제·개정 에 관한 사항
4. 전략적 공동투자, 핵심 전산시스템 변경 등 2개 이상의 자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 중 의장이 자회사간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 경영현안에 관한 사항(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사안 제외)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협의사항 중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리스크관리협의회에 그 의견을 요청해야 하고,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합니다.

다. 구성

협의회의 위원은 당사 회장(의장) 및 8개 자회사 대표이사로, 총 8명(지주 회장, 부산은행장 겸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 및 자회사의 임원 중에서 위원 또는 참석자를 정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전략 기획부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BNK금융지주 그룹경영관리협의회 구성(당연직 위원)>

성 명	직 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비 고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부산은행 은행장(겸직)	2013.8.14	2019.3월	의장
손교덕	경남은행 은행장	2014.1.28	2017.3월	위원
안효준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2016.2.1	2018.1월	위원
김일수	BNK캐피탈 대표이사	2016.2.1	2018.1월	위원
김승모	BNK저축은행 대표이사	2016.2.1	2018.1월	위원
손석근	BNK자산운용 대표이사	2015.8.11	2017.8월	위원
성명환	BNK신용정보 대표이사	2016.2.1	2018.1월	위원
이영우	BNK시스템 대표이사	2012.12.31	2017.1월	위원

라. 활동내역 개요

(1) 활동내역 개요

2016년도 그룹경영관리협의회는 3회(3분기 협의사항 없어 생략) 개최되었으며, 위원들의 참석률은 100% 였습니다. 동 협의회는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내규 제·개정 추진, 지주 및 자회사 2017년 경영계획, '투뱅크-원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업무 표준화 추진 등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 경영현안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6년 제1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 2016. 2. 25(10:00~11:30)

항 목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성세환(의장), 손교덕, 안효준, 김일수, 김승모, 손석근, 성명환, 이영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전원참석	
3. 협의사항	-	
4. 보고사항	제1호 : 2016년 그룹 행복한 금융 사업 추진 보고	
5. 기타사항	계열사별 주요현안 공유	

(나) 2016년 제2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 2016. 5. 20(09:00~10:20)

항 목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성세환(의장), 손교덕, 안효준, 김일수, 김승모, 손석근, 성명환, 이영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전원참석	
3. 협의사항	제1호 :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내규 제·개정 추진	
4. 보고사항	제1호 : 신규 수익원 발굴 실무협의회 운영	
5. 기타사항	자회사 주요현안 공유	

(다) 2016년 제3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 2016. 12. 2(10:30~11:30)

항 목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성세환(의장), 손교덕, 안효준, 김일수, 김승모, 손석근, 성명환, 이영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전원참석	
3. 협의사항	제1호 : 지주 및 자회사 2017년 경영계획 제2호 : 투뱅크-원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업무 표준화 추진	
4. 보고사항	제1호 : DJSI(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편입 결과 보고	

10. 리스크관리협의회

- 가. 역할
- 나. 협의절차(운영현황)
- 다. 구성
- 라. 활동내역 개요



10

리스크관리협의회

가. 역할

당사는 「리스크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그룹 및 각 자회사의 리스크정책 및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그룹의 제반 리스크관리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등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에 따른 결의사항 및 협의·심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의사항(제5조)

- 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리스크관리지침의 제·개정
- 그룹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 제7조 제3항에 관한 사항
(중복차주의 자산건전성 분류 차이 발생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 그룹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의 설정 및 초과운용 승인
- 그룹 편중위험 관리한도의 설정 및 초과운용 승인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의 및 심의사항(제6조)

-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에 관한 사항
- 그룹 리스크측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한 한도관리에 관한 사항
- 그룹차원의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공동 협의가 필요한 사항
- 그룹사간 자금지원관련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 진출, 그룹차원의 신상품 및 신서비스 개발 등으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경영관리협의회가 요청한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장이 정하는 사항

나. 협의절차(운영현황)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소집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장은 안전내용에 따라 필요시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합니다. 간사인 지주회사 리스크관리부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시행결과 등을 의장 또는 협의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 구성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및 리스크관리부장, 신용공여 취급 및 금융투자업 영위 자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됩니다.

2016년말 현재, 신덕수 BNK금융지주 위험관리책임자(부산은행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조현일 BNK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장, 이철수 경남은행 위험관리책임자, 김윤환 BNK캐피탈 위험관리책임자, 우상열 BNK저축은행 위험관리책임자, 조화제 BNK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 김수일 BNK자산운용 위험관리책임자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안전내용에 따라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부서장을 임시의원으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관리협의회 구성]

(2016년말 현재)

성명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비고
신덕수	BNK금융지주 위험관리책임자 부산은행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2016.01.01	-	위원장
이철수	경남은행 위험관리책임자	2016.01.01	-	의원
조현일	BNK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장	2012.12.28	2016.12.31	간사
김윤환	BNK캐피탈 위험관리책임자	2016.02.02	-	의원
우상열	BNK저축은행 위험관리책임자	2016.10.28	-	의원
조화제	BNK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	2016.07.27	-	의원
김수일	BNK자산운용 위험관리책임자	2016.10.26	-	의원

라. 활동내역 개요

2016년도중 리스크관리협의회는 규정에서 정하는 결의사항, 협의 및 심의사항에 따라 결의안건 19건, 협의 및 심의안건 7건을 처리하였으며, 그룹 및 계열사의 리스크관리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업권별 이슈사항 및 관리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016년도중 협의회에서 처리된 안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도 리스크관리협의회 활동내역]

개최일자	안전구분	안전명	회의결과
2016.1.29	보고	▪ '16년도 그룹 및 계열사 위험가중자산 관리방안 보고	보고완료
	보고	▪ 그룹 내부등급법 도입 관련 진행사항 보고	보고완료
	보고	▪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완료
2016.2.29	심의	▪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관련 공시정책 승인	원안대로 심의
	결의	▪ 그룹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운용 승인	원안대로 결의
	결의	▪ '16년도 그룹 위험가중자산 목표 수립(안)	원안대로 결의
	결의	▪ 그룹 중복차주 거액여신한도 관리방안	원안대로 결의
	결의	▪ '16년도 그룹 편중위험 관리한도 설정(안)	원안대로 결의
2016.4.28	심의	▪ 자본적정성 관련 공시범위 추가 승인	원안대로 심의
	결의	▪ 그룹 Total Exposure 관리 및 운용지침 개정(안)	원안대로 결의
	보고	▪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보고완료
2016.6.29	결의	▪ '16년도 그룹 위험가중자산 관리목표 재수립(안)	원안대로 결의
	결의	▪ 상호출자제한 및 주채무계열 거래은행 지정제도(안)	원안대로 결의
	보고	▪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보고완료
2016.9.30	심의	▪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	원안대로 심의
	심의	▪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 개정(안)	원안대로 심의
	심의	▪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안)	원안대로 심의
	결의	▪ 그룹 자산분류 부도인식 표준(안)	원안대로 결의
	결의	▪ 그룹 중복차주 주 부 거래은행 지정제도(안)	원안대로 결의

개최일자	안전구분	안전명	회의결과
	결의	▪ '16년도 그룹 위험가중자산 관리목표 재수립(안)	원안대로 결의
	보고	▪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완료
2016.10.25	결의	▪ 리스크관리지침 개정(안)	원안대로 결의
	결의	▪ 그룹 리스크관리 비상조치계획 업무매뉴얼 개정(안)	원안대로 결의
	결의	▪ 자회사 편입관련 리스크검토 업무매뉴얼 제정(안)	원안대로 결의
	보고	▪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완료
2016.11.11	결의	▪ 그룹 리스크 전이 방지 업무매뉴얼 신설(안)	원안대로 결의
	결의	▪ 그룹 리스크관리 비상조치계획 업무매뉴얼 개정(안)	원안대로 결의
	결의	▪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업무매뉴얼 개정(안)	원안대로 결의
2016.12.8	심의	▪ '17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안)	원안대로 심의
	심의	▪ 그룹 내부등급법 신용리스크 통제조직 운영(안)	원안대로 심의
	결의	▪ '17년도 국가별 신용등급 설정(안)	원안대로 결의
	결의	▪ 그룹 중복차주 주-부거래은행 지정제도 업무매뉴얼 개정(안)	원안대로 결의
	결의	▪ 그룹 Total Exposure 관리 및 운용지침 개정(안)	원안대로 결의
	보고	▪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결과보고	보고완료
	보고	▪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보고완료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12.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 계획

당사는 2016년 중 지배구조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행정처분·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2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n Compensation Practices
BNK Financial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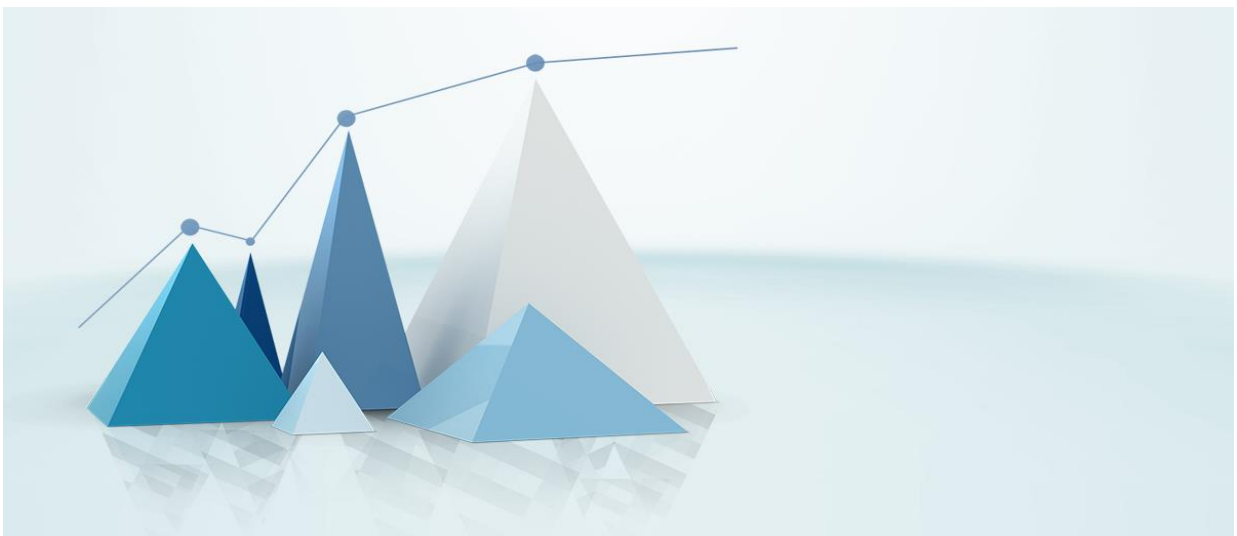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나. 구성

다. 권한과 책임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당사는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보상체계는 위험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회사의 성과와 연동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현재 및 미래의 잠재 위험을 고려한 변동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회사의 상기 보상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당사 「이사회규정」 제12조 제1항 제5호를 그 근거로 하여 2011년 3월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라 한다)에 의거 2016년 10월 28일 규정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명칭을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보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12조에 의거 위원회의 안전,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7조 및 「보수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거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사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1인 이상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리스크 관리 측면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총 4인(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이봉철)으로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사외이사는 3인(문일재, 차용규, 김찬홍)이며, 문일재 사외이사가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위원중 김찬홍 이사는 세무대학 회계학 교수, 한국회계기준원 자문위원을 거쳐 현재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회계학 전공 교수로서, 회계 관련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이며, 차용규 이사는 (주)한창에서 재무 및 회계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으며, 아울러 문일재, 김찬홍, 차용규 이사는 현재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로 보수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측면이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일재, 차용규, 김찬홍 위원이 선임되기 이전인 2016년 3월 주총 이전에는 사외이사인 김창수, 김성호, 김우석, 문재우, 박홍대 이사가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3월 정기주총 이전

성명	직명	사외이사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유무	약력
김창수	위원장	여(여)	무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現) 부산은행 사외이사(現)

성명	직명	사외이사여부 (리스크관리위원 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유무	약력
김성호	위원	여(여)	무	(재) 행복세상 이사장(現) 법무부장관
김우석	위원	여(여)	유	예일회계법인 회장(現)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봉철	위원	부(부)	무	롯데쇼핑 정책본부 부사장(現)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문재우	위원	여(부)	유	법무법인 율촌 고문(現) 손해보험협회 회장
박흥대	위원	여(여)	무	법무법인 유석 대표변호사(現) 부산고등법원장

-2016년 3월 정기주총 이후

성명	직명	사외이사여부 (리스크관리위원 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유무	약력
문일재	위원장	여(여)	무	대한석유협회 부회장(現) 조달청 차장
이봉철	위원	부(부)	무	롯데쇼핑 정책본부 부사장(現)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차용규	위원	여(여)	유	OBS 경인TV(주) 대표이사 UBC 울산방송(주) 대표이사
김찬홍	위원	여(여)	유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現) 한국회계기준원 자문위원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위원 선임일	임기 만료일
문일재	사외	위원장	2016.03.25	2017.03.24
이봉철	비상임	위원	2016.03.25	2017.03.24
차용규	사외	위원	2016.03.25	2017.03.24
김찬홍	사외	위원	2016.03.25	2017.03.24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는 「보수위원회규정」에 의거 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회사 성과 보수체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6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2015년도 경영진 장·단기 성과평가 및 보상을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경영진 보수체계는 기본연봉,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기성과급은 1년 단위로 성과 목표를 부여하고, 개인별 종합평점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및 지급금액을 확정토록 결의 하였으며, 성과평가 해당연도에 회장은 성과급의 40%, 그 외 경영진은 60%를 현금보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성과급은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 지급토록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7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은행연합회가 작성하여 고시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익년도 정기 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거나,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6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의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을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 결과 경영진 성과평가제도 합리화와 관련한 조치요구사항을 성과평가기준에 반영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평가지표인 RAROC을 도입하고, 비정상 손익의 제거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상·매각을 반영한 건전성 지표를 적용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정량지표는 동일하게 적용하되 담당 본부별 중점 관리 항목에는 높은 비중을 부여하여 충실한 지표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경영진 장·단기 성과평가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 28일 개최된 제4차 보수위원회에서는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특히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의 성과평가 반영 시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6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정

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소집방법, 결의방법, 주요현황을 포함하는 의사결정 절차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 소집 및 결의방법은 「보수위원회규정」 제8조(회의의 소집) 및 제9조(결의방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며, 평가대상자 선정 및 평가횟수, 시기, 평가 기간 등을 논의하고, 성과목표 수립 및 평가 절차, 평가 방법 등을 심의·결의 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위 사항을 반영하여 경영진 장·단기 성과 평가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6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와 2016년 10월 28일 개최된 제4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경영진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등에 맞게 설정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보수체계에 리스크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험 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수 지급, 보수체계 재조정 등 보수체계 관련 법규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2016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연차보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

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 평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 ①국내 : 지주회사, 자회사 경영진에 적용
- ②해외 : 해당사항 없음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6조에 지배구조법에서 정의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범위를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 5월 4일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변동보상의 대상자를 결정하고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 부사장, 상무, 상무보를 임원의 범주로 결정하였으며, 지배구조법 및 「보수위원회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투자금융, 외환딜링, 유가증권 운용, 파생상품 딜링 등에 종사하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범주에 따라 2016년 12월말 기준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 부사장 2명, 상무 1명, 상무보 1명 등 총 5명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5	회장, 부사장, 상무, 상무보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당해 연도말 기준으로 회장을 제외한 겸직 임원은 부산은행의 성과보상체계가 적용되나 당사에서 업무수행비율에 따른 일부 기본급 지급되어 인원수에 포함.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위원장(현재 문일재 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시 소집절차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6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없습니다.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회 개최 전 보수위원회 안건에 대해 이사들에게 사전자료 배포 및 설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사들의 요청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보수위원회 개최 전 반영함으로써 보수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사들의 의견 제시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2016년도 결의사항 중 별도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당사 보수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며 경영진 등의 평가보수 체계가 건전하게 수립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2016년도에는 총 4회차의 보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도 경영진 성과 평가 및 보상, 2016년 평가 보상체계 결정, 장·단기 성과평가 기준 개정 등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6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 : 2016년 3월 3일(목) (11:20 ~ 11:50)

[안건 통지일 : 2016년 2월 24일(수)]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성호	김우석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박홍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 2015년도 지주 경영진 단 기성과 평가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지주 장기성과 현금보상 성 과평가 확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지주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지주 장기성과 현금보상기 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차 보수위원회는 전체위원 6명이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경영계약서’ 및 ‘성과목표계약서’에 의거 경영진(회장, 부사장 2명)의 단기성과 평가 및 보상안을 심의하였으며, 퇴임 경영진에 대한 장기성과평가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보수 체계의 설계·운영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심의하고, 회사의 보수 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황을 논의하였습니다.

(나) 제2016년도 제2차 보수위원회 : 2016년 3월 25일(금) (11:50 ~ 12:00)

[안건 통지일 : 2016년 3월 17일(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문일재	이봉철	차용규	김찬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 위원장 선임 ¹⁾	의결권 제한 ¹⁾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본인 선임건으로 의결권 제한

정기주주총회 이후 이사회를 통해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사내이사를 제외한 사외이사 3명, 비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어진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는 전체위원 4명이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총 1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안건은 위원장 선임건으로 문일재 사외이사를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다) 제2016년도 제3차 보수위원회 : 2016년 5월 4일(수) (10:30 ~ 11:00)

[안건 통지일 : 2016년 4월 26일(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문일재	이봉철	차용규	김찬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결의안건					
가. 2016년도 자회사별 경영진 성과평가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경영진 장기성과 평가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6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경영진 장기성과 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차 보수위원회는 전체위원 4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총 4건의 안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안건은 2016년도 자회사별로 결의된 경영진 성과평가기준을 지주 보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조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회장의 재선임으로 인하여 최초 선임 시 체결한 장기성과 계약 종료로 회장의 장기성과 평가 및 보상금액을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2016년도 성과평가기준에 맞춰 지주 경영진에 대한 장·단기 성과 계약 체결을 결의하였습니다.

(라) 제2016년도 제4차 보수위원회 : 2016년 10월 28일(금) (11:10 ~ 11:20)

[안전 통지일 : 2016년 10월 18일(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문일재	이봉철	차용규	김찬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 결의안전					
가. 경영진 성과평가 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4차 보수위원회는 전체위원 4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1건의 안전을 심의 하였습니다.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의 성과평가 반영 시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4) 평가

당사는 보수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2월초 전년도 보수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의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보수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소집 절차 및 사전 안전 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위원회 역할과 권한 및 수행기능의 범위, 경영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보수위원회 위원 및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서면 조사 등을 통해 이사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의 도출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 및 연간 계획 수립 시 활용됩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나. 보수 세부사항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재무지표로는 수익성 지표(ROE, ROA, RAROC), 건전성 지표(실질고정이하여신비율, 실질연체대출채권비율), 자본적정성 지표(BIS 총자본비율, BIS 보통주 자본비율), 효율성 지표(Cost-Income-Ratio), 안정성 지표(이중레버리지비율, 부채비율), 주주수익률(상대적 TSR) 등을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재무 지표로는 ‘그룹경영혁신과제’ 이행, ‘경영진 개인역량 평가’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그룹 경영전략 및 경영계획, 본부별 중점추진과제 등을 고려한 세부 항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경영진의 경우 전사 재무성과(그룹 수익성, 그룹 자본적정성, 그룹 건전성, 그룹 효율성 및 지주회사 안정성 지표 등)를 공통으로 반영하되, 담당 업무별로 가중치를 상이하게 설정하여 책임 경영을 강화하였으며, 비재무지표인 경영혁신과제 및 경영진 개인역량 평가는 경영진의 담당 업무를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업무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리스크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경영진의 경우 회사 전체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로 전사 재무성과 지표를 공통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 성과측정 지표로는 비재무 지표인 해당 경영진의 본부별 전략과제 이행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해당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

과급 지급률이 변동되도록 하여, 변동보상 중심의 보수체제로 개인 성과보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당사는 경영진에 대해 변동보상의 상당부분을 수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으며 변동보상 비율은 직위, 책임의 정도 등과 연동하여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성과는 회장의 경우 현금보상 40%와 추가연계 현금보상 60%로 지급하며, 그 외 경영진의 경우는 현금보상 60%와 추가연계 현금보상 4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현금보상은 평가년도에 성과평가 확정 후 1개월이내 지급하고, 추가연계 현금보상은 3년간 균등 배분하여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성과는 현금보상 40~60%, 추가연계 현금보상 60~40%로 계약 체결하고, 계약기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의 성과달성률에 따라 현금보상은 성과평가 확정 후 1개월이내 지급하고 추가연계 현금보상은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보수액 중 이연된 보수액은 3년간에 걸쳐 이연지급을 하며, 이연지급시에도 경영성과가 반영된 주가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경영진의 경우 개인 성과 달성률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단기 성과보상의 경우 성과 달성률에 따라 회장은 -50% ~ 150%, 부사장 및 상무는 -50% ~ 110% 범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업무 손실 발생이나,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을 경우 성과보수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한 환수율에 따라 환수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성과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 중 변동보상액 결정시 이연지급을 위한 주식수가 확정되며, 이를 3년간 이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그 지급액은 이연지급 시점의 주가와 연동되어 결정되므로 지급 시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경영진의 보수체계는 기본급과 변동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수액 중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기본급으로 분류하고,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 무담당자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장·단기 성과보수는 변동 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변동보수의 규모는 직무의 가치 및 특성, 업무책임의 강도, 그룹내 보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나)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수와 주가연계현금보수로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 중 상당부분을 장기성과와 연동하기 위하여 성과보수액에 따라 40~60%를 주가연계상품으로 보수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라)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경영진의 경우 성과보수액 중 40~60%는 성과평가 확정 후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60~40%는 주가연계상품으로 3년간 균등 배분하여 이연지급합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당사는 일반직원의 동기부여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기본 급여외 “이익 배분제”와 “조직성과급”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익배분제는 그룹 전체 이익 목표달성률에 따라 이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고, 조직성과급은 성과평가를 통해 산출된 부서별 조직기여도 등급 및 그룹 전체 이익 목표달성률에 따라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입니다. 또한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성과공유라는 취지를 위해 우리사주조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직무와 성과중심 보상문화를 위해 3급이상 관리자급 일반직원은 연봉제, 4급이하 일반직원은 밴드형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한 직무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의 역할과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여 조직에 공헌과 임금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6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 결의 대상이 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종사자의 경우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 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2016.3.3 보수위원회 결의에 의거하여 경영진 성과평가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평가지표인 RAROC을 도입하고, 비정상 손익의 제거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상·매각을 반영한 건전성 지표를 적용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경영진별 정량지표는 동일하게 적용하되 담당 본부별 중점 관리 항목에는 높은 비중을 부여하여 충실한 지표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6.10.28 보수위원회 결의에 의거하여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 내용을 점검하고,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의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주1)}	법인세차감전 순이익(B) ^{주2)}	비율 (A/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전년도 (2015년)	81	9,191	0.008	112 ^{주3)}	0.72
당해년도 (2016년)	90	7,001	0.012	120 ^{주4)}	0.75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 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한다.

[예시 : 당해연도가 2016년인 경우 2015년 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주3) 계열사와 겸직 36명 포함, 기중 퇴직인원 포함

주4) 계열사와 겸직 30명 포함, 기중 퇴직인원 포함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원			직원 ^{주2)}				
		등기 임원 ^{주1)}	사외 이사	업무집행 책임자	1급	2급	3급	4급	기타
년도 (2015년)	보수총액	6.1	2.3	3.4	5 (6명)	3 (9명)	20 (24명)	22 (29명)	11 (26명)
	성과보수액	1.3	—	1.2	0.04	0.03	0.16	0.22	—
당해년도 (2016년)	보수총액	6.7	2.1	4.5	5 (6명)	4 (7명)	15 (20명)	39 (46명)	11 (23명)
	성과보수액	1.9	—	1.2	0.04	0.04	0.20	0.45	0.02

주1) 등기임원 : 사외이사를 제외한 사내·비상임이사

주2) 계열사와 겸직인 임직원 포함, 기중 퇴직인원 포함임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 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기본급 ^{주2)}	성과 보수액 ^{주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15년)	임원	7	7.6	5.3	2.4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당해년도 (2016년)	임원	5	8.8	8.7	4.0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주1) 해당년도중 6개월이상 임원(사외·비상임이사 제외)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 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 로 분류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성과 보수액	현금	주식 ^{주1)}	주식연계 상품 ^{주2)}	기타 ^{주3)}
전년도 (2015년)	임원	5.3	2.9	—	2.4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16년)	임원	8.7	4.7	—	4.0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주1)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등)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주2) 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1), 주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으로 기재

주3) 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 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15년)	임원	3.4		3.4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16년)	임원	5.8		5.8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주1) 이연보수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한다.

주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 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 으로 구분 기재

주3) 0000년 발생 성과보수액을 익년도 1/4분기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수액을 0000년말 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이하 동일)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 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 상품	기타
전년도 (2015년)	임원	3.4	—	—	3.4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16년)	임원	5.8	—	—	5.8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 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15년)	임원	3.4	2.4	0.8	0.2	0	0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
당해년도 (2016년)	임원	5.8	4.0	1.0	0.6	0.2	0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16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16년(t기) 발생분, 2015년(t-1기) 발생분, 2014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축소액 ^{주1)}	직접적 조정 ^{주2)}	간접적 조정 ^{주3)}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 된 금액 ^{주4)}
전년도 (2015년)	임원	0	—	0	3.3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당해년도 (2016년)	임원	0.2	—	0.2	5.8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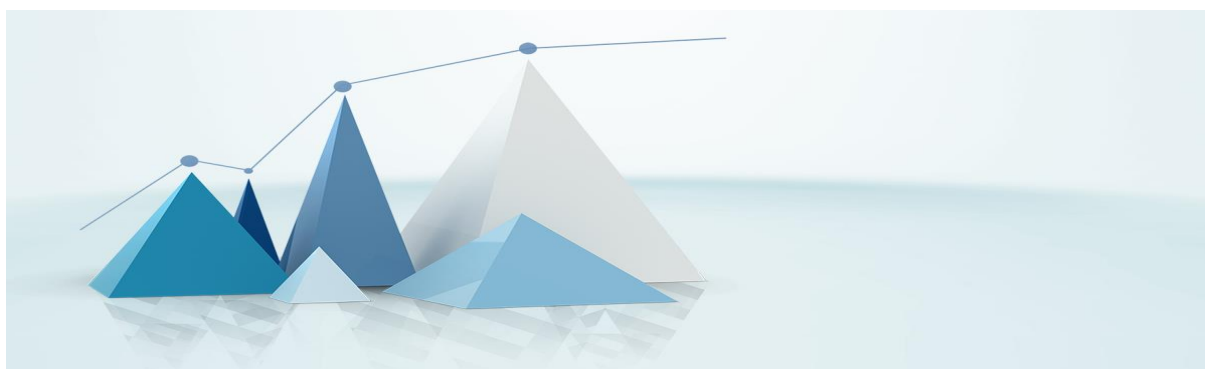
(단위 : 명, 억 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5년)	임원	—	해당사항없음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16년)	임원	—	해당사항없음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첨부[관련 규정]

1. 정관
2. 지배구조 내부규범
3. 이사회 규정
4.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5.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6. 보수위원회규정
7.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8. 감사위원회규정
9.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10. 사외이사운영규정
11.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1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



[첨부 1]



정 관



2011. 3.15 제정
2012. 3.27 개정
2013. 3.28 개정
2014. 3.28 개정
2015. 3.27 개정
2016. 3.2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BNK금융지주라 한다. 영문으로는 BNK Financial Group Inc.라 표기한다. (2015.3.27 개정)

제2조(사업의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회사 등(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2. 자회사 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3.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4.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5.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
6.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7. 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8. 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9.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자회사 등에 대한 브랜드, 라이선스 등의 대여 및 제공 업무
11.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12. 기타 전 각호의 업무에 부수 또는 관련된 업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이 회사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bnkfg.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내에서 발간되는 부산일보 및 국제신문에 게재한다.
(2015.3.27 개정)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93,379,899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013.3.28 개정)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 재산의 분배에 관한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식,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2013.3.28 개정)

제9조(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배당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 내로 한다.

②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 기준 연 1%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하고, 이 정관 제56조 및 제57조에서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가액의 결정방법, 이익배당하는 조건을 정한다. 단,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는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013.3.28 개정)

③이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참가적 또는 비참가

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2013.3.28 개정)

④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2013.3.28 개정).

⑤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013.3.28 개정)

⑥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존속기간 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그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3.3.28 개정)

제10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1조(전환주식) ①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전환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20%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발행할 수 있다. (2013.3.28 개정)

②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주식과 동수로 한다. (2013.3.28 개정)

③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상환주식) ①이 회사는 발행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013.3.28 개정)

②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

③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로부터 발행일 후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시 상환하여

야 하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이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④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에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 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 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2013.3.28 개정)
- ⑥회사는 상환주식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11조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2014.3.28 개정)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4.3.28 신설)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투자회사, 사무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거래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법인과 개인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4.3.28 신설)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14.3.28 신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식 (2014.3.28 신설)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14.3.28 신설)
6.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14.3.28 신설)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2014.3.28 개정)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14.3.28 신설)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4.3.28 신설)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4.3.28 신설)
4.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4.3.28 신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14.3.28 개정)

④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2014.3.28 개정)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방법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14.3.28 신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14.3.28 신설)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014.3.28 신설)

제14조(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3.3.28 개정)

②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 회사 또는 상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⑤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3.3.28 개정)

⑨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명의개서대리인)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주주와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6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8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 후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장 사 채

제19조(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012.4.15 신설)

제19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4.3.28 개정)

1.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8 개정)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8 개정)

②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2014.3.28 신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2013.3.28 개정)

⑤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 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이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2015.3.27 신설)

②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2015.3.27 신설)

③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이하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된다. 다만, 이사회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당시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2015.3.27 신설)

1. 이 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
2. 이 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는 경우

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4.3.28 개정)

1.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8 개정)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8 개정)

②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2014.3.28 신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

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2013.3.28 개정)

⑤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가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제휴회사 등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거하여 발행된 사채의 이익배당참가에 관한 사항은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기준으로 하여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3조(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4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2013.3.28 개정)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부산광역시내에서 발간되

는 「부산일보」와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서울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 유고시의 주주총회의 의장은 제24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대행한다.

제27조(의장의 질서 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서면결의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3.3.28 개정)

②회사는 제1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3.3.28 개정)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및 이사회

제34조(이사의 수) ①이 회사의 이사는 15인 이내로 한다.

②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구분하고,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35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사외이사는 제47조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6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②사외이사가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 등의 사외이사(퇴임 후 2년 이내에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2013.3.28 개정)

⑤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부터 기산한다.

제37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 법규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자
 2.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자
- (2016.3.25 개정)

②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 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 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 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38조(이사의 보선) 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4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4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9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한다.

②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약간명의 부회장, 사장 및 부사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을 대표이사로 할 수 있다.

제40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제41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통지 및 소집을 대행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3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 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이사회는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 하여야 한다.

제44조(이사회 의 심의 · 의결사항 등)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2016.3.25 신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세부사항 및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2016.3.25 신설)

제45조(이사회 의 결의방법) ①이사회 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정관

의 변경, 대표이사의 선임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012.4.15 개정)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4.15 개정)

③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6조(이사회 의사록) ①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7조(자회사 등에 대한 이사회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 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②이사회 및 각 이사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자회사 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이사는 책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자회사 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이사회는 전체 자회사 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8조(위원회) ①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이사회운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5. 경영발전보상위원회
6.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49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50조(고문 등)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51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 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감시 및 감사할 의무가 있으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위원장은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4.15 신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의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2.4.15 신설)

⑤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위 제6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46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⑧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⑨감사위원회는 본조 제1항 내지 제8항 이외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결의한다.

⑩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53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계 산

제54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영업년도말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제1호 내지 3호의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2.4.15 개정)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2012.4.15 개정)

4. 연결재무제표(2012.4.15 신설)

②감사위원회는 전항의 서류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012.4.15 개정)

④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 영업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2.4.15 개정)

⑤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와 외부감사인인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방법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제5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2012.4.15 개정)

제56조(외부감사인 선임) 이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하여 통지하거나 또는 감사대상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8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9조(중간배당) ①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가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012.4.15 개정)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2012.4.15 신설)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 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다만, 종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에서 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3.3.28 개정)

제60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61조(보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 또는 기타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년도) 정관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한

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4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및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35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및 대표이사는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5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의 임기) 정관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6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의 선임) 정관 제3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7조(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정관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8조(설립 이후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의 보수는 15억원을 한도로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주식이전회사) 아래 주식이전회사들은 공동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1년 1월 18일 기명날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4.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3.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3.28 부터 시행한다.

첨부(관련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3.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3.25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규정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첨부 2]



지배구조 내부규범



2015. 2.27 제정

2015.11. 6 개정

2016.10.2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BNK금융지주가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건전경영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회사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지주회사등”이란 BNK금융지주(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자회사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2. “자회사등”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3.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4.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5.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지배구조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주요업무집행책임자”란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면되는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8. “경영진”이란 임원 및 임원에 준하는 자로 본부를 담당할 권한을 보유하면서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이사회등”이란 지배구조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총칭하여 말한다.

1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수위원회가 심의·결의한 사람을 말한다.

②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용어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 이 규범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원칙 및 정책) ①회사는 이사회와 경영진간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위해, 회사의 의사 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특정배경 및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 과반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가 견제의 기본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 주요 내규 및 이사회등의 활동내역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후 경영환경 및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이사회 의결로 제정·변경한다. 다만, 관계법령, 감독규정 및 정관 등 상위규정 변경에 따른 단순한 자구수정은 대표이사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2장 이사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 의 구성현황

제5조(이사회 의 구성) ①이사회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사의 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6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내규에서 정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자료를 제출 받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성 제고에 필요한 지원

⑤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①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같은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③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회사와 그 자회사등간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①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사외이사 선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③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9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갖추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③이사회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④이사회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자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 ⑤이사회는 자회사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제10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이사회 결의사항 등)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 및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부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2.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3. 분기별 결산결과
4. 경영진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의 책임자 선임 및 해임
6.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7.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세부사항 및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에 따른다.

제4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2조(이사의 선임 절차) ①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된다.

②사내이사(대표이사 회장 제외) 및 비상임이사 후보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③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④회사는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직전년도 정기주주총회 후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는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정기주주총회일 기준 사외이사 총수)의 연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⑤사외이사 총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등의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회사의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4조(이사의 퇴임) ①이사가 임기 만료 전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의사를 표시한 사임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는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④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중대한 위배 등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⑤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며, 보결 선임을 한 경우 피선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정원수를 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결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절 이사회 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제15조(이사회 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회 의장이 소집 한다. 다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의 과반수, 감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 등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 결의방법) ①이사회 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는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사회등 운영계획 수립) ①회사는 매년 이사회등의 운영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회사는 이사회등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고, 이사회등 운영 계획 수립 시 활용한다.

제18조(이사회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의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시기, 방법, 절차, 지표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사회의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이사회 정책 반영 및 운영계획 수립 시 활용한다.

제19조(이사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사내이사,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평가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자기평가, 이사회 평가, 직원 평가 등 사외이사의 평가 방법
2. 제1호에 따른 평가별 평가 주기

③이사회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할 수 있다.

④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하되, 회사와 최근 2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⑥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⑦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1. 이사회운영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5. 보수위원회

②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특별사안의 심의 또는 결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각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
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결
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
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동 사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22조(위원장 및 위원 선임 기준) ①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각 위원회 규정에서 위원장 임기를 별도 명
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
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이사회운영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
리 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장 등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의 겸직으로 위
원의 수가 4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만큼 다른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이사회등의 효율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이사회등의 개최 및 사외이사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3.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하
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대표이사 회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2. 대표이사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3. 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4.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및 점검·보완
5.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는 제3항 제2호의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내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후보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5조(감사위원회) ①위원회는 3인 이상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 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한다.

②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 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리스크관리위원회) ①위원회는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리스크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5.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외규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득하도록 정한 사항
9. 감독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그룹 리스크 측정방법 및 측정모델의 사용 관련 의사결정 사항
10.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보수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위원회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리스크관리 측면이 충분히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결의한다.

1.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보수위원회의 심의·결의 대상인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6.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규정에 관한 사항
7. 보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8.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그룹경영관리협의회) ①회사는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대한 전략적 경영의사 결정을 위하여 경영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11.6 신설)

②협회의 위원은 대표이사 회장 및 자회사 대표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다.

③협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 중에서 위원 또는 참석자를 정할 수 있다.

④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연간 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해산·영업양도·분할·합병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전략적 공동투자, 핵심 전산시스템 변경 등 2개 이상의 자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 중 의장이 자회사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 경영현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협회는 협의사항 중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리스크관리협회의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제29조(리스크관리협의회) ①회사는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 업무지원을 위해 리스크관리협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위원은 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및 리스크관리부장, 신용공여 취급 및 금융투자업 영위 자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하며, 의장은 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리스크관리지침의 제·개정
3. 그룹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 제7조 3항에 관한 사항
4. 그룹 Total Exposure 관리한도의 설정 및 초과운용 승인
5. 그룹 편중위험 관리한도의 설정 및 초과운용 승인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①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원회등의 운영에 관한 연간계획 수립은 제17조를 준용하고,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31조(임원의 자격요건) ①임원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②임원이 된 후에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같은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32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①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26조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에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②위험관리책임자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자로서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자가 같은 법 제28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직을 잃는다.

제2절 회사에 대한 임원의 권한과 책임

제33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대표이사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②대표이사 회장은 관계법령 및 내규 등에서 정하는 이사의 책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그룹의 전략방향 수립, 전략의 정기적 점검 및 이사회 보고
2. 그룹의 수익·성장목표 달성을 위한 안정적 지원
3. 주요 현안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이사회의 지침 수행

③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회장이 부여하는 직무에 따른 권한 및 전결권을 가지며, 이사회 및 회장의 제 명령을 준수하고 부여 받은 직위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34조(임원의 선임) ①회사는 임원의 선임 시 지배구조법 및 관련법령상 임원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 회장은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받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되고, 그 임기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③사내이사(대표이사 회장 제외)는 대표이사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그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최초 선임 시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룹사간 임면의 경우 2년 이내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선임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선임되고,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임원의 퇴임) ①대표이사 회장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중대한 위배 등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다. 다만,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

②대표이사 회장 유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해진 자가 차기 대표이사 회장 선임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사내이사
2. 업무집행책임자
3.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자

③업무집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 처리하며, 인사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임원으로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1. 임기(고용계약기간)가 만료되었을 때
2.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3. 인사규정에서 정한 자연면직 사유에 해당될 때

④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해임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

리책임자를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36조(임원에 대한 교육) ①회사는 신임 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현황,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임 임원이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보고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회사는 임원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 ①회사는 임원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그 평가결과를 임원 선임 및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회사는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요건, 임원에 대한 교육·연수·평가제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38조(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방법, 평가시기 등) ①회사는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다.

③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성과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④회사는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구성내역 및 지급방법) ①임원(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제외)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으로 구성하며, 업적연봉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분된다.

②단기성과급은 1년 단위로 성과목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표이사 회장은 성과급의 40%, 그 외 임원은 60%를 성과평가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성과급은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한다.

③장기성과급은 3년 단위로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에 지급률을 곱하여 직위별로 40~6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성과급은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한다.

④회사의 경영지표가 악화되었을 경우 등 단기성과급 및 장기성과급 지급 시 환수율을

산정하여 차감 후 지급한다.

⑤업적연봉의 최고지급한도와 임원별 업적연봉의 평가기준 및 지급률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제5장 최고경영자에 관한 사항

제40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①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 주체, 관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3.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5.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6.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직무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또는 개시 시기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④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 지주회사등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이사회는 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1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①전략기획부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②전략기획부는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최고경영자의 자격) ①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자격요

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최고경영자 후보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2.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제43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④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등에서 정한다.

제44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5조(책임경영체제 확립) ①회사의 최고경영자의 임기, 선임 및 퇴임 관련한 사항은 제 34조 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최고경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공시에 관한 사항

제46조(정기공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 제5항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1.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7.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8.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권고·지시 사항 및 금융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9.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5항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 등
2. 회계연도 중 보수액
3. 성과보수 금액, 지급형태, 성과보수 환수기준 및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4. 이연된 성과보수
5.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6.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7.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회등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연차보고서는 통합하여 작성 및 공시할 수 있으며, 연차보고서 작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수시공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1. 이사의 선임 및 퇴임(사임 포함)
2.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3.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제정 및 변경

②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제4호의 경우 제외)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참석률
2.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
3.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 수
4. 지배구조법 제33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

③사외이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보수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경우 회의일시, 안건내용(보고안건 포함), 사외이사의 참석 및 찬성 여부 등을 익월 15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익월에 공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 이내에 향후 공시 날짜, 지연사유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시계획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48조(공시방법) 이 규범에 따른 공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7장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 및 완전자회사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제49조(내부통제기준) ①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②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룹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50조(위험관리기준) ①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②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리스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51조(완전자회사등의 특례) ①지배구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은 사외이

첨부(관련규정)

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완전자회사등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가 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5.2.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BNK로 지주 및 계열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일괄 변경하여 2015. 3.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첨부 3]



이사회규정



2011. 3.15 제정
2011.12.16 개정
2012. 7.20 개정
2012.12.28 개정
2013. 8.22 개정
2014. 3.31 개정
2014.12.29 개정
2015. 2. 4 개정
2015.11.06 개정
2016.10.2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사외이사는 사외이사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이사회의 역할)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이사회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5조(이사의 권한과 의무) ①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외이사는 취임 시 회사 경영진 및 지배주주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 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②이사회 및 각 이사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자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이사회는 전체 자회사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내규에서 정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받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성 제고에 필요한 지원

⑤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대표이사 회장) ①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한다.

②대표이사 회장은 이사회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③대표이사 회장 유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해진 자가 차기 대표이사 회장 선임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사내이사
2. 업무집행책임자
3.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자

제9조(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의 과반수, 감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소집통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결의사항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 회장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의 결정
 - 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다.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 가. 그룹의 중장기 경영계획 및 연도별 경영계획 확정(연결 재무제표 기준)
 - 나.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다. 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
3. 자회사 관리

가. 자회사등의 편입·제외 및 기존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 다만, 손자회사등의 편입 및 제외의 경우,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편입 및 제외 시점의 출자규모가 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 보고로 갈음한다.

4.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가.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관한 사항
- 다.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 내 위원회규정에 관한 사항
- 라. 사외이사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마.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관한 사항
- 바. 경영진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사. 내부통제규정에 관한 사항
- 아. 리스크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제·개정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위임)
- 자.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
- 차.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규정
- 카. 기타 외규에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내규에 관한 사항
- 타. 상기 각 호의 규정의 개폐 시 관계법령, 감독규정 및 정관 등 상위규정의 변경에 따른 단순한 자구수정은 대표이사 회장에 위임한다.

5.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 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 라.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마.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감사위원 제외)
- 바. 이사 후보의 확정
- 사.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이사의 보수의 결정
- 아.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 자.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평가
- 차.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
- 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타.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파.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 등의 위촉에 관한 사항(다만, 특정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

6. 중요 계약 및 소송에 관한 사항

가. 건당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용역계약인 경우는 건당 금액이 100억원 초과)

나. 건당 소가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소의 제기·포기 및 취하

7. 자본금 및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및 자본감소

나. 제준비금의 자본전입

다. 자금 차입

라. 사채의 발행

8. 기타 사항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나.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다.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라. 건당 10억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지급

마. 관계법령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바. 이사회 내 위원회가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사. 기타 대표이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상기 각 호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당해 안건을 부의할 이사회 개최 전 회계연도말 또는 당해 회계연도 6월말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 중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등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부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3. 분기별 결산결과

4. 경영진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의 책임자 선임 및 해임

6.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7.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1. 이사회운영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5. 보수위원회

②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특별사안의 심의 또는 결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항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 또는 결정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 받은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13조(결의방법) ①이사회 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는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안설명) 이사회 안전에 관한 제안설명은 안전 관련 담당본부장이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서장은 배석하여 안전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의 청취) ①의장은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진,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 사무지원조직) ①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지원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을 전략기획부가 담당한다.

②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은 이사회를 보좌하고 경영정보제공 등 이사회의 활동 수행을 지

원하고,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한다.

③이사회 의전관련 사항은 비서팀에서 담당한다.

제17조(의사록) ①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전략기획부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③이사회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사록을 작성하여 모든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감독기관 제출 등 기타 사정으로 긴급하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록 승인 전에 의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12.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7.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12.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3.31 부터 시행한다.

첨부(관련규정)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첨부 4]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3. 8.22 개정

2014.12.29 개정

2016.10.2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사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정책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장 등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의 겸직으로 위원의 수가 4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만큼 다른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결의사항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 1.이사회등의 효율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첨부(관련규정)

- 2.이사회등의 개최 및 사외이사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 3.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기타 이사회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위원회의 결의내용은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은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 아닌 자의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지원부서 및 의사록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2013.8.22, 2014.12.29 개정)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첨부 5]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5. 2. 4 개정

2016.10.2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향과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을 승인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감시 감독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의 결의로 선임한다. 이 경우 총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2016.10.28 개정)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회에서 매년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6.10.28 개정)

제4조(소집) ①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의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결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리스크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10.28 개정)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2016.10.28 개정)
5.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2016.10.28 신설)

7.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16.10.28 신설)
8. 외규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득하도록 정한 사항 (2016.10.28 신설)
9. 감독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그룹 리스크 측정방법 및 측정모델의 사용 관련 의사결정 사항 (2016.10.28 신설)
10.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심의한다. (2016.10.28 신설)

1. 출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회사 등의 설립 및 취득에 관한 사항
2. 신사업 진출 및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투자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고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받는다. (2016.10.28 개정)

1. 자회사등의 각종 리스크의 관리현황 및 리스크 허용한도의 관리현황
2. 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한 결의사항
3.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
4. 경영관리협의회에 제출한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2015.2.4 신설)
5.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6.10.28 신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지원 및 의사록 작성) ①리스크관리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안건, 회의경과 및 결의내용,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16.10.28 개정)

제11조(위임사항)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의사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또는 절차와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첨부 6]



보수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3. 8.22 개정

2014.12.29 개정

2015. 2. 4 개정

2015.11.06 개정

2016.10.2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성과 제고방안 수립, 경영진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를 수행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경영진”은 임원 및 임원에 준하는 자로 본부를 담당할 권한을 보유하면서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②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리스크 관리측면이 충분히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④ 사외이사인 위원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결의사항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1.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2.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 3.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4.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5.보수위원회의 심의·결의 대상인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 6.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규정에 관한 사항
- 7.보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8.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에 심의·결의사항을 부의할 경우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보상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및 보상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회의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안전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로 실무위원회를

첨부(관련규정)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인의 출석) ①위원회는 관련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부서 및 의사록 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제2(경과조치) 제6조 제2항은 2016년도 자회사 경영진 성과평가기준 및 그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와 보상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첨부 7]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5. 2. 4 제정

2015.11. 6 개정

2016.10.2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임원으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하고, 그룹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임원 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위원회는 임원후보 인선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결의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대표이사 회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2. 대표이사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첨부(관련규정)

3. 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4.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및 점검·보완

5.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내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부서) ①전략기획부는 위원회의 관련업무 지원부서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등 관련 업무 지원

2. 그 밖에 위원회의 필요한 업무 지원

②지원부서는 제1항 제1호의 업무 추진 현황을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사록 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③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④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⑤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첨부 8]

감사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2. 7.20 개정

2015. 2. 4 개정

2016.10.2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 (2015.2.4 신설)
2. 재무감사, 업무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7.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권한) ①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 증명서, 확인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품의 요구
2.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6.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위원회로부터 제1항 각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015.2.4 신설)

제5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련법령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구 성

제7조(구성)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내로 한다. (2016.10.28 개정)

③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종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6.10.28. 개정)

③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결의사항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1.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3.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4.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6.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
8. 감사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다만, 법령, 기타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이나 자구수정은 제외
9. 관련법령, 정관,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
10.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11.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3.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4.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
8.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9.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10. 관련법령,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11.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1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된다.

②위원회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위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2.7.20 개정)

③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들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를 제외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제4장 감사 및 보고

제13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15.2.4 개정)

제14조(권한위임) ①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2015.2.4 개정)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3.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위임한 위원장의 직무와 감사보조기구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업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권한 대행) ①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위원장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장에 위임된 사항은 위원장이 전결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차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이사회보고) ①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5.2.4 신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015.2.4 개정)

제5장 보 칙

제17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①위원장은 제14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및 주요 업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5.2.4 개정)

②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2016.10.28 개정)

제17조의1(감사위원회의 업무내용 보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위원회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10.28 신설)

1.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2. 감사 결과 및 그 조치 내역
3.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업무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①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감사보조기구)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기구를 둔다.

②감사보조기구에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원과 적정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21조(세칙 등 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7.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첨부 9]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2015. 2. 4 제정

2015.11. 6 개정

2016.10.2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예측 가능한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이사회 결의로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회사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2.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③후보추천위원회는 전항의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로 적극적 자격요건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①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또는 개시 시기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②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

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추천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이 규정,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④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영승계 절차) ①회사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의거 최고경영자 후보자 그룹을 구성하고,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이 추천한 자를 후보자 그룹에 포함할 수 있다.

②후보추천위원회는 제4조 및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 중에서 최종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최종 후보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고, 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8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별표]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①최고경영자의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회사는 직무대행자를 즉시 선임하고 지체없이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최고경영자의 유고 시에는 사내이사, 업무집행책임자, 이사회가 정하는 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사유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부서) ①전략기획부는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②전략기획부는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첨부 10]

사외이사운영규정

2011. 3.15 제정
2013. 8.22 개정
2014.12.29 개정
2015. 2. 4 개정
2015.11. 6 개정
2016. 3.25 개정
2016.10.2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의 적법성,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율) 회사는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4조(사외이사 자격요건) ①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②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회사와 그 자회사등간 사외이사 겸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④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제7조 제6항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5조(사외이사 선임) 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제6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의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가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7조(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①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제19조에 따른 사외이사 지원부서에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제17조에 따른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의 공시)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통지에 같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별표1>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절차 개요
2.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해당 금융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계법규 및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경력
7.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사외이사의 임기) ①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임기의 만료시점을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함에 따라 임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제17조에 의한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위원회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③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등의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회사의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①회사는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직전년도 정기주주총회 후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는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정기주주총회일 기준 사외이사 총수)의 연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은 사외이사 총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사외이사의 권한)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사외이사의 책임) ①사외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회사 및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사외이사는 제1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의 참여에 할애하여야 한다.

③사외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자회사등을 포함)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회사는 매년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직 시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회사가 제5항에 따라 가입, 갱신하는 임원책임배상보험은 사외이사 자기부담액을 배상책임액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기부담액의 최대한도는 1억원 이내로 한다.

⑦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금융회사(계열회사 및 해당 금융회사가 설

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금융회사가 회원·사원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 등이 비영리법인 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

제14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성 제고에 필요한 지원

④회사는 선임사외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내 위원 연임 제한) ①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사는 제1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외이사 활동 내역 공시) 회사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경우 회의일시, 안건내용(보고안건 포함), 사외이사의 참석 및 찬성 여부 등을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익월 15일까지 공시한다. 단, 익월에 공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 이내에 향후 공시 날짜, 지연사유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시계획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자기평가, 이사회 평가, 직원 평가 등 사외이사의 평가 방법
2. 제1호에 따른 평가별 평가 주기

③이사회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할 수 있다.

④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하되, 회사와 최근 2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⑥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⑦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외이사의 보수) ①회사는 사외이사에게 그 책임과 활동의 정도에 따른 보수(수당 포함)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외이사의 보수를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회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에게 이사회등의 활동, 간담회 활동, 사외이사회의, 이사회 워크숍, 그룹 내·외부 연수 참여, 경영 현안 논의를 위한 임직원 면담, 퇴임식 행사 등 사외이사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편익(교통, 숙박, 식사, 차량 지원, 연수비, 체육활동비, 감사패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설치) ①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전략기획부로 한다.

②사외이사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2. 위원회의 업무 지원
3.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5.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③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제2항 제2호의 업무 지원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실

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재무, 그 밖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사외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경영정보를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③자회사등은 회사가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7일 전까지 발송하여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사외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회계·경영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①회사는 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사외이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공시) ①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 및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②이 규정에 따른 공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관계법령상 특례적용, 주주총회의결 등 정당한 사유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를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과 그 이유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법령과 관계) ①이 규정이 지배구조법 및 상법 등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②사외이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이사회규정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5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내규의 개정 등에 따른 용어 변경, 간단한 자구 수정 등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26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방법 및 교육 등)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별 평가주기, 사외이사에 대한 연수프로그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3.2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첨부 11]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2015.12.17 제정

2016.10.2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경영진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회사의 성과평가와 보상체계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경영진”은 임원 및 임원에 준하는 자로 본부를 담당할 권한을 보유하면서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 2.“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수위원회가 심의·결의한 자를 의미한다.
- 3.“변동보상”은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 및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 외에 지급되는 성과보수를 의미한다.
- 4.“성과연동형 주식보상(Performance share)”은 주식(주가연계 현금보상을 포함한다) 등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에 정해진 결정 방법 및 계산식에 따라 일정기간 후 회사가 정한 목표 달성 정도에 연동하여 행사 가격, 부여 수량, 효력 발생 기간 등이 결정되는 주식보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회사의 성과평가 및 보상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한다.

- 1.이사회 및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상체계가 위험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2.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체계는 높은 보상을 위한 과도한 위험 감수(risk taking)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는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총변동보상액(total variable compensation) 지급으로

인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본적정성의 유지 및 확충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그룹의 핵심가치 제고를 위하여 회사는 보상정책을 건전하게 수립,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대상자는 경영진(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경영진 성과평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다.

제5조(성과평가 및 보상절차) 회사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된다.

- 1.위원회는 그룹의 보상체계가 건전하게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2.위원회는 「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맞추어 회사의 경영진 성과평가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보상체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 3.위원회는 경영진 성과평가에 관한 기준에 의거 평가대상자별 성과평가 및 보상 결과를 심의·결의한다.

제6조(보상과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①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으로 채용·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회사의 보상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시 대상이 되는 분야의 성과와는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변동보상의 원칙, 설계 및 조정) ①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상당부분은 변동보상이어야 하며, 개인·해당부서·회사 전체 차원의 성과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②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변동보상제도는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1.현재 및 미래의 잠재 위험을 감수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규모와 비용
- 2.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의 규모와 비용
- 3.당기손익으로 계산된 잠재 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시기의 일관성

③회사는 회사 전체, 소속부서 및 개인 업무의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여 성과보수 중 당기 현재보상액과 과거발생분에 대한 미래이연지급액의 축소 등을 통하여 경영진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변동보상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이연지급) ①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변동보상의 상당부분(예: 40~60%)은 수년간 이연지급(deferral)되어야 하며, 변동보상의 비율은 직위, 근무연수, 책임의 정도 등과 연동하여 증가되어야 한다. 특히, 최고 경영진과 고액연봉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경우 이연지급되는 변동보상의 비율은 상당수준 이상(예: 60% 이상) 이어야 한다.

②이연지급 기간은 영업의 성격 및 위험과 경영진·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활동과 연계하여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연하여 지급되는 변동보상 부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pro rata basis)보다 커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9조(변동보상의 지급형태 및 방식) ①회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변동보상 중 상당부분(예 : 50% 이상)을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등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식 또는 주식연계 상품에 대하여 최소 보유기간(이연지급기간을 포함한다)을 설정하는 등 그 행사가 적절하게 유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외에도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성과연동형 주식(Performance Share) 등의 주식연계 상품을 포함하여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장기성과급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성과급은 경영실적 및 규모 등을 반영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현금보상 지급 등) ①이연 지급된 보상 중 주식 및 주식연계 상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현금보상으로 지급될 수 있다.

②지급확정기간(vesting period) 중 회사 전체, 소속부서 및 개인의 업무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미확정 부분(unvested portions)은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환수되어야 한다.

제11조(보상체계 재조정) 회사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보상체계를 건전한 위험관리 및 장기성장과 연계되도록 재조정하여야 한다.

제12조(보장형 상여 및 과도한 퇴직보상의 제한) ①회사의 보장형 상여금(guaranteed bonus)은 건전한 위험 관리 또는 보상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미래의 보상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최소의 보장형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한다.

②회사는 과도한 퇴직 보상으로 인하여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위험관리의 건전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등 금지) 회사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보상체계의 위험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평가 지표) ①회사는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진 및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장기성과와 수익성 관련 지표를 중심지표로 설정하여 최종 평가와 연계하고, 위험 연계를 위해 건전성 관련 지표를 일정수준 이상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의 반영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별도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기예측, 회사별 특성 등에 맞게 경영진의 성과평가 지표를 조정하여야 하며,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관대해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1.외형 및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를 포함할 것
- 2.고객만족도 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시키고 고객만족도 평가를 정기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할 것
- 3.수익성 평가 시 단순한 절대 손익 및 결과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평가지표를 적용할 것
- 4.수익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 순이익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제거하여 정확하게 성과를 반영할 것
- 5.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지표로서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고객만족도의 증진, 위험 관리 등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우수 인적 자원의

확보 및 개발 등과 같은 인적 자원 지표를 반영할 것

6. 수익성 및 건전성 관련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측정·평가하고 장기성과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연지급 변동보상 제도를 활용할 것

7. 내부목표 달성 외에도 시장성과를 반영하는 등 금융회사간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적용할 것

제15조(보상 관련 공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5항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 등
2. 회계연도 중 보수액
3. 성과보수 금액, 지급형태, 성과보수 환수기준 및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4. 이연된 성과보수
5.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6.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7.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②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결의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③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보상 관련 공시방법은 회사 및 금융업권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2.17부터 시행한다.

제2(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및 기준에 체결한 계약은 해당 제도 종료일과 계약 만기일까지 유효하다.

제3(적용례) 회사 경영진 성과평가기준 및 그에 따른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은 2016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시행일)① 이 규정은 2016.10.28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첨부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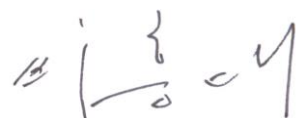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

후보대상자	검토의견
김창수	적정함

본 위원회는 상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2016 년 3 월 3 일

(주)BNK 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 원 장 박 홍 대 (서명 또는 날인)

1. 사외이사 자격요건 준수 여부

가. 자격요건 결격여부 확인

구분	심사항목	결격여부
임원 결격요건	금융지주회사법 제 3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 조	해당사항없음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지주회사법 제 4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	해당사항없음
	모범규준 제 16 조	충족

나. 적극적 자격요건 (모범규준 제 16 조 1 항)

구분	충족여부	비고
전문성	충족	경제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보유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가능
윤리성 · 책임성	충족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2.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구분	관계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없음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없음

3. 이사회 등 참여도 : 양호

구분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횟수	참석률	참석횟수	참석률
2014 년	7 회(8)	87.5%	14 회(15)	86.7%
2015 년	14 회(14)	100%	23 회(23)	100%

주)참석횟수는 당해년도 정기주주총회 후부터 익년도 정기주주총회까지 산정
 2015 년은 2015 년 정기주주총회 후부터 2016 년 2 월까지 산정
 ()는 총 개최횟수

4. 사외이사 평가 결과 : 탁월(S 등급)

- 역량 및 전문성,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회사 발전 기여도 면에서 자기평가, 이사회평가, 직원평가, 참석률 등을 종합한 결과 탁월(S 등급) 획득

5.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에 대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검토 결과 : 적정함

- 동 후보자는 무역 및 경제 관련 전공자로서 경제와 금융 전반에 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자문위원,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 등을 겸직하는 등 전문성과 사회적 신망이 높은 자임.
- 김창수 후보자는 관계법규(금융지주회사법 등)와 당사 내규(사외이사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 현재 동 후보자가 최근 2년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부산대학교의 경우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가 없고,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BNK 저축은행 및 부산은행의 사외이사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음.
- 특히, 2014 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 자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 등급)으로 당사 사외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었음.
- 동 후보자의 사외이사 임기 동안의 수행 능력과 평가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BNK 금융그룹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자 함

BNK 금융지주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TEL : 051-620-3000
www.bnkfg.com